

#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한국 가톨릭교회 정책 질의에 대한 주요 후보자의 답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생태환경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청소년사목위원회,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여성소위원회는 오는 3월 9일에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사안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난 2월 15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생명, 인권, 언론, 경제, 정치, 노동, 농업, 생태보호, 평화증진, 장애인, 청소년, 여성, 이주민, 난민’ 등 제 분야에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비춰 본 한국 사회 현실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60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2월 22일(화)까지 회신을 부탁하였고, 2월 25일(금)에 취합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정책 질의에 대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로부터 답변서가 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으므로 답변 종합표와 요약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정책 질의의 취지는 가톨릭 신자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이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공동선에 부합하는지 올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정치생활의 목적이 인간의 존엄성 증진과 공동선 실현에 있음을 가르치며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해서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사목헌장 76항)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생태환경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청소년사목위원회,**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여성소위원회**

# 제20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들의 답변서 종합

(표의 후보명은 후보 기호순에 따른 순)

## 생명윤리위원회 질의

### [인간생명과 낙태]

1.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 단계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조화시키도록 법률을 개정하라는 취지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법 공백 상태에서 많은 혼란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1-1. 정부가 2020년 10월 7일 입법 예고한 낙태죄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의하면,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명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는 낙태에 대하여
이재명	현행 법령은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부의 건강위험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임신 24주 이내로 제한하여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입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도 여러 의견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국회가 국민의 뜻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생명보호는 언제나 소중하고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저출생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이슈가 된 이후로 태내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 존속과 관련된 일이 되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수용해가는 자세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신을 중지 할 권리와 건강, 그리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도, 아이를 낳을 권리도 모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형법상의 낙태의 죄를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었으며, 기존의 ‘모자보건법’을 ‘임신, 출산, 양육 권리보장 및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해서 임신 결정으로부터 양육까지를 종합적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보호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같은 시기 발의한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의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을 배제하는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안전한 임신중단과 여성의 권

	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한 임신중단과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의료기관 접근 보장과 성적 동의를 기본으로 한 피임접근권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	---

1-2. 임신·출산·양육에 대해서는 개인들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도 책임이 있는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안정적으로 자녀를 낳아서 책임지고 기를 수 있는 물질적 토대와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명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물질적 토대와 사회적 제도 마련에 대하여
이재명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으로 발표한 돌봄 국가책임제, 아동수당 확대, 육아휴직 확대, 아동치과 주치의 확대 등을 통해 아이 키우는 부담을 크게 줄일 것입니다. 또한,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과 각종 위험·학대로부터 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등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물질적 토대와 사회적 제도 마련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윤석열	적극 공감하며,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촘촘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 10대공약에 ‘임신·출산 전 성인 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 ‘난임휴가 기간을 3일에서 7일(유급)로 확대’,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 ‘산후우울증 치료를 포함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 지원’,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100만 원 부모급여 제공’,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단계적 유보통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아 및 아동 돌봄과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도 자세한 통합적 제도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상정	주4일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생활 균형 보장, 전 국민 육아휴직제로 평등 육아 실현 (부모 3개월씩 할당, 자영업·플랫폼노동자 등 확대), 아동 “의·식·주” 보장 (아동 무상의료, 친환경 급식, 국공립어린이집 50% 확대)으로 국가와 사회가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워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특히,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의 삶이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행복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아빠들도 아이 키우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엄마에게 아이와 일,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불행은 끝나야 합니다. 누구나 아이 키우는 행복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일의 종류, 채용 형태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 개개인의 사랑과 헌신

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책임 속에서만, 행복한 육아가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저와 정의당은 ‘슈퍼우먼방지법 시즌2 : 전국민 육아휴직제도’를 제안합니다.

첫째, 육아휴직급여를 현실화해 육아휴직사용률을 높이겠습니다. 초기 3개월(부부합산 6개월)에만 집중된 육아휴직을 최소 1년(부모합산 2년)은 제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소득대체율을 통상임금의 80%로 인상하고 1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상한선 150만원을 2022년 최저임금의 1.5배 285만원으로 높이겠습니다. 휴직 후 6개월이 지나 직장에 복귀해서야 지급 받는 사후지급금 25% 제도 또한 폐지하고 소득 감소 기간에 제대로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로 평등 육아를 실현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은 부부가 반드시 육아 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하고 자동육아휴직제도를 법제화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사용률과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높은 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의 특징은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또한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는 90일에서 120일로 즉각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유급 10일에서 30일로 늘리겠습니다.

셋째, 전국민 육아휴직제로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전국민고용보험 도입과 병행해 플랫폼, 특수고용, 자영업자들에게도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2026년에는 모든 일하는 시민의 육아휴직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고용보험기금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계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더블 돌봄휴가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수준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고, 현행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2배로 확대하는 특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넷째, 기업과 노동자가 대체인력에 대한 걱정없이 육아휴직 제도를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여 기업의 안정적 대체인력 확보를 돕겠습니다. 육아휴직자 기존 급여의 1.5배를 지급하는 ‘대체인력평등수당’을 신설해, 대체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겠습니다. 일가정양립실태조사(2020년 조사)에서 육아휴직제도 시행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물었때, 1순위가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가중”(23.4%)이었으며, 2순위가 “대체인력을 찾는 어려움”(19.4%)이었습니다. 동료의 공백으로 인한 업무 과

	<p>중으로, 동료의 출산을 축복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기업이 육아휴직을 통해 숙련 인력을 보전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p> <p>다섯째, 육아휴직에 대해 국가, 사회, 기업이 함께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준 사업주가 기소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21년 10월 기준)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부당 대우 및 차별적 처우를 받을 경우 임금을 보전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제재를 실효화하고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프랑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이러한 불이익 처분이나 부당해고에 대해 손해 배상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150만원(현행 2개월 120만원 10개월 80만원)으로 상향하여 기업들이 인력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
--	---

1-3. 낙태를 승인하는 법은 개인의 고유한 생명 불가침권을 침해하고 공동선에도 배치되는 바, 이러한 입법에 반대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양심 및 사상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후보명	낙태 승인 입법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양심, 사상, 신앙의 자유 보장에 대하여
이재명	누구든지 어떠한 이유로도 특정한 선택을 강요받아서 안 되며, 아이를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를 모두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의 양심·사상·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입니다. 낙태 승인에 반대하는 국민과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국민의 양심·사상·신앙의 자유가 모두 우리 사회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가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입법을 반대할 자유는 언제든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임신중단이 권리로 인식되는 만큼, 예를 들어 개별 의료기관이 임신중단을 거부할 권리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심상정	아이를 낳을지 말지, 누구와 어떻게 낳을지, 낳는다면 몇 명을 낳을지, 그것은 시민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신을 중지할 권리와 건강, 그리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도, 아이를 낳을 권리도 모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차별금지과 평등]

2. 현재 일부 국회의원들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며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취지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질의하고자 합니다.

2-1.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성별, 장애, 나이, 출신, 민족, 피부색 등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까지도 포함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녀의 생물학적 성의 구별을 거부하고 자신의 성별과 성적 지향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명	자신의 성별과 성적 지향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 대하여
이재명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중요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 심사과정에서 종교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의 충분한 토론 과정을 통해서 종교단체 등과의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적 지향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종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이로 인한 사회적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실질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미 부문별로 차별 금지관련 법안과 제도가 존재하는데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따로 떼어 낼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포함된 내용 중 노력을 통해 차이를 만들어 낸 것(예: 학력 등)과 주어진 것(인종, 성별 등)의 구분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큼니다. 성적 지향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생물학적 성의 구별을 부정하게 되면 결혼 제도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상정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는 태어날 때의 생물학적 성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별이 태어날 때의 성별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역사적으로 태어날 때의 성별과 자신의 정체성이 다른 시민들이 존재해왔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들의 인식과 선택(성별 정정)은 자의적이거나, 누군가의 주입이나 강요에 의해서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별 정체성 문제는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태어날 때의 성별과 자신이 현재 느끼는 성별이 불일치가 인정받지 못하

<p>여 사회에서 살아가는 성소수자가 당하는 수많은 차별과 편견, 불이익은 너무나 커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p> <p>만약 가톨릭 교회가 태어날 때의 성별만이 진리이고 이를 사회적으로 인정(차별금지)하지 않는다면, 가톨릭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를 강제치료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 결국 성소수자의 권리와 존엄은 존중받지 못하고, 성소수자는 인권이 없는 시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p> <p>정의당 심상정후보 역시 가톨릭 교인이지만 성소수자 역시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이들의 보편적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p>
---

2-2. 교회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서로 가정을 이루어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일부 조항은 혼인과 가정에 관한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고, 가톨릭 교회의 신앙과 윤리관에도 어긋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명	혼인과 가정에 관한 보편적 가치와 가톨릭 교회의 신앙과 윤리관에 대하여
이재명	혼인과 가정에 있어서 보편적 가치에 반하거나 교회의 신앙과 윤리관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는 갈등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신앙과 윤리관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회의 변화를 국가가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각 주체들은 의견을 가감없이 개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윤석열	차별금지법이 현 제정안으로 통과된다면 연장선상에서 가족의 법적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도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심상정	아직 우리나라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은 아니지만 동반자관계를 유지하며 가정을 이루는 동반자관계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동성혼과 동반자관계를 인정하는 제도화에 찬성합니다. 동성애관계는 역사적으로 이미 존재해왔고 계속 존재할 것이기에 많은 인권선진국들은 동성혼과 동반자관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것보다 인정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존중해줄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편견, 배제, 차별을 예방, 줄임으로써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

	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차별금지법 그 자체가 혼인, 가족구성의 문제에 적용되는 법률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배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며, 가톨릭 교회를 포함한 종교계가 함께 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	---

2-3.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정당한 사유’ 내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금지의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육기관에서 생명에 관련된 교육,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교육을 할 때 충돌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명	생명,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교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에 대하여
이재명	차별금지법안의 정당한 사유 또는 합리적인 이유라는 규정이 포괄적이고 해석의 소지가 다분하다면 법안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화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 충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현재의 차별금지법 제정안 등은 차별금지의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심상정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사유는 4대 영역(고용, 재화용역시설 공급이용, 교육, 행정서비스)에만 적용됩니다. 교회의 설교나 종교행사에서 성직자의 말씀이나 설교 등은 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직자 육성 학교나 교회가 운영하는 일반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차별금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교육과정과 내용 상 차별금지법이 정한 차별금지 행위를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혐오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으면서 생명, 혼인, 가정 등과 관련하여 성직자 육성에 필요한 교리의 입장, 내용에 대한 교육은 차별금지법 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 [혼인과 가족]

3. 현재 여성가족부와 일부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건강 가족 기본법 개정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가정과 자녀를 지원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남녀의 혼인을 기초로 하는 가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1인 가구를 비롯해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벗어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혼인·출산·입양으로 구성된 가족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이루는 기본 단위이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3-1. 현재 여성가족부와 일부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비혼 동거’와 ‘사실혼’의 법적 가족 범위의 확대 정책은 평생을 함께하는 부부의 일치와 사랑, 자녀 출산과 양육이라는 가정의 고유한 개념과 소명을 훼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명	‘비혼 동거’와 ‘사실혼’ 등의 법적 가족 범위의 확대 정책에 대하여
이재명	국가의 가족 정책의 방향은 변화된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화 된 가족을 포용하는 데 있습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사실혼 가령 노년의 고령 커플이나, 아동 양육을 위한 가정위탁가족 등은 가족정책 대상에서 배제, 소외되어 왔습니다. 향후 개정되는 법과 제도는 보다 포용적인 방향에서 국가의 보편적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이 없도록 모든 가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윤석열	전통적인 가족형태만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 형태의 보호가 해당 가정의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와 연결된다면 시대 흐름상 불가피한 선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심상정	<p>현재 여성가족부와 일부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비혼 동거’와 ‘사실혼’의 법적 가족 범위의 확대 정책은 평생을 함께하는 부부의 일치와 사랑, 자녀 출산과 양육이라는 가정의 고유한 개념과 소명을 훼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건강가정기본법의 경우는 2005년 당시 시행 당시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건강가정’과 상반되는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개념을 도출시키므로 중립적인 법률명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다양성 국민인식조사(여성가족부, 2020년) 에서는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문항에 응답자의 69.7%가 동의하였습니다. 다양한 가족에게 차별적인 내용 전반을 정비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정비와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정책 설계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p>

3-2. 교회는 혼인에 대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지속적인 결합으로 “서로를 완성하고, 관심과 배려, 그리고 출산을 통해 자연스러운 인생 여정을 걷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명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지속적인 결합이라는 교회의 혼인관에 대하여
이재명	천주교의 교리에 따른 결혼관을 존중합니다. 다만, 국가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혼인에 대한 개인의 선택과 판단이 보호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윤석열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심상정	혼인은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유배우자 가구 또는 정상가족 중심에서 다양한 삶의 양식을 포괄해 나가야 합니다.

3-3. 현재 1인 가구, 동거 가구, 한 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에 대한 지원은 각각의 형태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여러 법률과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법적 개념이나 정의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려는 시도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인식과 행동에 혼란을 낳고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명	가족의 법적 개념이나 정의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이재명	가족의 정의를 변화된 시대와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것은 가족의 개념을 국가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형태의 가족을 국가정책에서 소외하거나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가톨릭 교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윤석열	가족의 법적 개념이나 정의를 변경하는 시도보다는 여러 가정 형태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심상정	가족 범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족다양성 국민인식조사 결과, 우리 사회 전반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수용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개념이 혼인, 혈연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개념으로부터 확장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을 포함해 1인 가구, 비혼동거 및 비혼출산, 입양 가정 등의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 수용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시대상을 반영한 정책 설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가족 차별을 초래하는 법제도는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4. 현재 생애 말기 환자들의 편안하고 인간다운 임종을 위해 여러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 2월에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17년 8월부터 호스피스법이 시행되었고,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4-1. 현재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변 환자로 제한되어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 범위의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명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 범위의 확대에 대하여
이재명	찬성합니다. 의학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편안하고 인간다운 임종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말기환자(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기에 말기환자로 정의되어 질 수 있는 전체 질환으로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상정	많은 말기 환자의 생애말기 삶의 질 향상과 존엄한 죽음을 위해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4-2. 호스피스 형태로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호스피스가 있으나 시설과 제도적 장치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큼니다. 환자와 가족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시설 확충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명	호스피스 시설 확충과 제도적 보완에 대하여
이재명	인구구조 변화로 연간 사망자 수가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질 높은 생애 말기 돌봄에 대한 요구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단순히 선택권 보장 차원이 아니라, 국민이 생애 마지막 시기를 품위 있고 평온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 보장의 측면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개선·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서는 입원형 호스피스의 대기기간이 길고 독거노인, 장

	<p>에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의 경우 경제적 부담, 정보 불평등, 문화적 차이에 대한 배려 부족 등으로 호스피스 이용에 격차가 큼니다. 또한, 가정이나 익숙한 삶의 기반이 되는 장소에서 생애 말기 돌봄과 임종을 맞이하는데 필요한 시설 부족과 제도 미흡 등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큼니다. 가정간호와 가정호스피스는 말기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의료인데 제공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아 이용이 힘들고, 가정호스피스 중이던 환자도 제도 미흡 등으로 인하여 불안해진 가족들에 의해 다시 응급실로 이송되어 병원에서 사망하게 됩니다.</p> <p>지역사회 중심의 생애 말기 돌봄과 임종을 위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기반한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모델을 구축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등 관련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p>
<p>윤석열</p>	<p>우리나라의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뜻있는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출발하여 제도로 정착되었습니다.</p> <p>2003년부터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2015년 7월 입원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해 오고 있으며,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9월부터는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및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부터는 자문형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p> <p>바람직한 호스피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측면인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과정과 만족도도 높아야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시설을 확대하고자 하며, 중앙 및 권역별 호스피스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호스피스 시설의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p> <p>호스피스·완화의료의 잠재적 대상자를 발굴하고 조기 개입을 위해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p>
<p>심상정</p>	<p>호스피스 관련 시설 확충과 제도적 보완에 동의합니다. 입원형, 자문형 호스피스의 확대와 함께 특히 익숙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남은 삶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가정형을 집중 확대하겠습니다.</p>

4-3.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이 원하는 생애 마침을 준비하기 위한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장기요양 시설에서의 노인 돌봄과 노인 인권 향상에 대한 방안이 요청되는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명	장기요양 시설에서의 노인 돌봄과 노인 인권 향상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이재명	<p>장기요양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 등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인권의 사각 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 등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돌봄 종사자의 처우가 돌봄서비스의 질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돌봄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등 노인 돌봄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p>
윤석열	<p>일부 장기요양시설에서 노인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의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공 장기요양시설의 설립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며, 전반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
심상정	<p>시설이 아니라 자신이 살던 거주지에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보건의료-복지-돌봄-주거 등 통합돌봄 제공체계)’ 체계로 사회서비스 체계를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시간 단위가 아니라 인당, 사례당 책임 등 새로운 공급방식을 도입해 노인들이 필요한만큼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p> <p>비리 및 인권침해 시설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고용보장 및 보호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p> <p>국공립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요양기관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공공재가센터를 확대하고 월급제 요양보호사를 도입해 가사가사지원과 수발,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예정입니다.</p>

## 정의평화위원회 질의

### [사형제도]

“사회가 부과하는 처벌의 첫 번째 목적은 ‘잘못으로 발생한 피해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려면 처벌의 본질과 범위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결정하여야 하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곧 다른 방법으로는 사회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극단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생명의 복음』, 56항).

5.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이후 24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는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없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abolitionist in practice) 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15대 국회이후 아홉 번째 <사형폐지에관련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국가가 직접 침해하는 형벌인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기타\_\_\_\_\_

후보명	사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이재명	① 찬성한다. 다만, 전쟁범죄, 집단살해 등과 같은 범죄에서는 사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③ 기타.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제의 완전한 폐지는 사회의 성숙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임.
심상정	① 찬성한다.

### [이주민]

“일 자리를 찾아나서는 이민이 결코 재정적 사회적 착취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관계에 있어서도, 해당 사회의 다른 모든 노동자들에게처럼 이민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노동의 가치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지, 국적이나 종교 또는 인종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커다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민들 스스로 느끼는 절박한 처지를 착취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노동하는 인간』, 23항).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할 권리들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누리도록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외국인 노동자들을 착취하려는 생각이 확산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신중하게 감시하여야 한다. 평등과 공평의 기준에 따른 이민 규제는 이민이 그들의 인간 존엄을 인정받으면서 사회에 통합될 수 있게 보장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다. 이민들은 인간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그들의 가족과 함께 사회생활의 일원이 될 수 있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간추린 사회 교리』, 298항).

6.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머지않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력은 필수적이고, 이미 가장 열악한 조건에 놓인 노동 현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국 노동자들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사업장변경의 제한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권에는 차별적 요소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자국 노동자와 차별 없이 노동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기타\_\_\_\_\_

후보명	외국인 노동자가 차별 없이 노동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에 대하여
이재명	③ 기타(신중 검토)
윤석열	① 찬성한다.
심상정	① 찬성한다.

6-1. 찬성하신다면, 이에 대한 핵심적 정책공약은 무엇입니까?

후보명	이에 대한 핵심적 정책공약은
이재명	
윤석열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외국인, 외국국적동포(F-4), 유학생 등 다양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축산업이나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는 외국인이 없으면 생산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p>어떤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건 차별과 인권침해를 겪지 않도록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개선할 것입니다. 현행 고용허가제만으로는 다양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를 모두 포괄하여 안정적 외국인력정책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p> <p>따라서 외국인력 도입단계부터 국내 노동시장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단계, 그리고 선별적으로 정주형 이민자로 정착하는 것까지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내외국인 상생의 외국인력정책을 추진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외국인 인력정책을 전담할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습니다. 내국인 고용여건 악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 허가 및 취업 허용하고 적정임금제를 적용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단속 인원 확대하고 지방정부에 단속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p>
<p>심상정</p>	<p>(1) 이주민 전담기구 설치, 이민법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직속 ‘이주사회전환특별위원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사회 전환 준비와 UN 이주글로벌 컴팩트 이행 점검 및 기반 마련</li> </ul> </li> <li>○ 국내 거주 이주민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점검을 위한 이주민 전담 정부기구 설치</li> <li>○ 이주민의 체류자격과 조건, 보호 권리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한 일반원칙과 기준 등을 규율하는 「이민법」 제정</li> </ul> <p>(2) 노동비자 영주제도 도입과 인권친화적 고용허가제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비자 영주제 도입을 통한 이주노동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기본권 보장 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 숙련도·전문성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로 정한 일정한 요건(범죄, 기한 내 고용기간 등)을 충족하는 경우 노동비자 영주권 부여</li> </ul> </li> <li>○ 인권 존중 이주노동관계 제도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노동비자 영주제도의 사전단계로 활용</li> </ul>

[난민]

“우리 이웃이 이주민이라면 복합적인 도전 과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불필요한 이민은 피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는 품위 있는 삶과 온전한 발전에 필요한 환경을 출신 국가에서 조성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자신과 가족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며 개인적 성취도 이룰 수 있는 장소를 찾을 권리가 각 개인에게 있음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주민들의 도착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다음의 네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곧 환대하기, 보호하기, 증진하기, 통합하기입니다. “이는 상명 하달식으로 복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네 가지 행동을 통하여 함께 여정을 걸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리하여 그들 각자의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다름에 열려 있고, 인간적 형제애의 정신으로 그들을 증진할 방안을 알고 있는 도시와 나라들을 건설해야 합니다”(『모든 형제들』, 129항).

“이는 특히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피해 온 이들을 향한 몇몇 필수 불가결한 응답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비자 발급 확대와 간소화, 개인과 공동체 후원 프로그램 채택, 가장 힘없는 난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통로 개설, 적절하고 품위 있는 주거 제공, 개인의 안전과 기초 서비스 접근 보장, 적절한 상담 지원과 신분증을 소지할 권리 보장, 공정한 사법 제도 접근, 은행 계좌 개설 가능성과 최저 생계비 보장, 임시 보호나 환대 프로그램 제공, 종교의 자유 보장, 사회 통합 촉진, 가족의 재결합 지원, 지역 공동체의 통합 절차 마련이 있습니다”(『모든 형제들』, 130항).

7. 대한민국은 1993년 난민협약을 비준하였고, 2012년에 난민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난민 인정률은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허위 난민 신청자라는 제도적 남용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1%밖에 되지 않는 난민 인정률은 지나치게 높은 심사기준과 절차적 권리의 미보장 등에 의한 종합적인 결과로써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난민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삶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난민 인정자를 위한 정착지원 기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7-1.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 위한 난민심사의 제도적 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기타\_\_\_\_\_

후보명	난민심사의 제도적 개선에 대하여
이재명	① 찬성한다.
윤석열	① 찬성한다.
심상정	① 찬성한다.

7-2. 찬성하신다면, 이에 대한 핵심적 정책공약은 무엇입니까?

후보명	난민심사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핵심적 정책공약은
이재명	난민인정에 관한 공약은 제시한 바 없으나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임.
윤석열	신속하고 공정한 난민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난민심사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난민위원회를 독립적이고 공정성을 갖춘 상설 심판원(tribunal)에 해당하는 기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난민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강제송환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해 취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최저생계가 가능하도록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공정한 난민인정의 요체는 정확한 사실인정입니다. 이를 위해 난민 발생 지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지역전문가와 해당 지역 언어 전문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심상정	무응답

7-3. 난민 인정자를 위한 정착지원 기반의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기타 \_\_\_\_\_

후보명	난민 인정자를 위한 정착지원 기반의 확대에 대하여
이재명	① 찬성한다.
윤석열	① 찬성한다.
심상정	① 찬성한다.

7-4. 찬성하신다면, 이에 대한 핵심적 정책공약은 무엇입니까?

후보명	난민 인정자를 위한 정착지원 기반의 확대를 위한 핵심적 정책공약은
이재명	난민인정자 정착지원에 대한 공약은 제시한 바 없으나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임.
윤석열	난민의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해 생계비 및 주거시설 지원 기준 등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적응하며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한 보다 세분화된 조기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심상정	인권을 존중하는 난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을 존중하는 「난민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피해자’로 난민 규정</li> <li>- 난민심사 신청서 작성 지원시스템 개선, 심사회부 사전 판단제 폐지 내지 최소화, 보호시설에서의 장기체류 금지 및 시설 개선, 전문 심사인력제 및 심사 이의제기 권 도입 등 심사과정 개선</li> <li>- 심사 일정 기한 지연 시 ‘인도적 체류허가자’ 가(假)인정</li> <li>- 인도적 체류허가자 처우 확대</li> </ul> </li> </ul>
--	---

### [언론의 자유와 책임]

	<p>“대중 매체는 인간 공동체의 여러 분야, 곧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종교에서 인간 공동체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에 이용되어야 한다. 대중 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은 공동선을 위한 것이다. 사회는 진실과 자유와 정의와 연대 의식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의 정보 체계가 인간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간추린 사회 교리』, 415항).</p> <p>“대중 매체의 세계에서는 흔히 이데올로기, 이익 추구, 정치적 통제, 집단 간의 경쟁과 알력, 기타 사회악들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분야 고유의 어려움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간추린 사회 교리』, 416항).</p> <p>“국가 권위는 자기 임무로서, 현대 사회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진실하고 공정한 정보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옹호하여야 한다. 국가는 법률의 공포와 효과적인 적용을 통하여, 사회 매체의 오용으로 공중도덕과 사회 발전에 중대한 위험이 미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공권력은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아야 할 각 사람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제재해야 한다. 공권력은 대중의 이익에 관계되거나 대중의 근거 있는 불안을 해소시켜 줄 정보를 제때에 성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대중 매체를 통해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할 수 없다. 이러한 개입으로써, 개인과 집단의 자유를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498항).</p>
--	---

8.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자유에는 언론 종사자들의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유로 왜곡, 조작된 거짓 정보가 무책임하게 난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와 더불어 언론의 책임이 같은 비중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8-1.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의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높은 편이다.      ② 낮은 편이다.      ③ 기타 \_\_\_\_\_

후보명	언론 자유의 수준에 대하여
이재명	① 높은 편이다.
윤석열	③ 기타 (민주화이후 높은 수준에 머물렀으나 최근 들어 언론사에 대한 차별적 규제, 편파적 예산지원, 언론자유를 약화시키게 되는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 사례 등으로 언론자유 수준이 하락하였다고 판단)
심상정	③ 기타 (평균적으로 높은 편이나 국가보안법과 최근의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 등 위해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8-2.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 책임의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높은 편이다.      ② 낮은 편이다.      ③ 기타 \_\_\_\_\_

후보명	언론 책임의 수준에 대하여
이재명	② 낮은 편이다.
윤석열	② 낮은 편이다.
심상정	② 낮은 편이다.

9. “진실과 자유와 정의와 연대 의식에 근거한 정보”(『가톨릭 교회 교리서』, 2494항)의 생산과 전달을 위하여, 대중 매체와 1인 미디어 등에 대한 자유 보장과 더불어 공권력의 정당한 감시와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기타 \_\_\_\_\_

후보명	언론 자유 보장과 더불어 공권력의 정당한 감시와 조치에 대하여
이재명	① 찬성한다.
윤석열	③ 기타. (유튜브, 개인블로그 등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들과 기존 전통 미디어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똑같은 잣대의 규제를 할 수는 없으며, 매체별 특성에 따른 자율규제와 타율규제의 적절한 배분과 탄력적 적용이 필요함.)

심상정	② 반대한다.
-----	---------

9-1. 찬성하신다면, 이에 대한 핵심적 정책공약은 무엇입니까?

후보명	언론에 대한 공권력의 정당한 감시와 조치를 위한 핵심적 정책공약은
이재명	<p>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누구를 위한 자유냐도 중요한 관점입니다. 언론의 고의적 조작뉴스와 가짜뉴스로 개인과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피해자에게 실효성 있는 보상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언론의 횡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p> <p>우선 신문, 방송사와 언론단체가 참여해 추진 중인 중인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에 기대를 겁니다. 언론이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율규제지만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된다면 언론의 횡포를 감시하는 바람직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p> <p>이와 함께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합니다. 국회 언론미디어제도특위에서 시민사회, 언론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p>
윤석열	
심상정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

“정보는 민주적 참여를 위한 주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이다. (...) 정보의 객관성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가운데, 특별히 주목하여야 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이나 집단들이 조종하고 있는 뉴스 미디어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에, 정치 활동과 금융 정보 기관들의 유착까지 더해지면 이는 전체 민주주의 제도에 위험한 결과를 미친다”(『간추린 사회 교리』, 414항).

10. 과거 정부의 노골적인 ‘언론장악’으로 인해 언론인들이 해직되고 언론사의 파업이 장기간 이어지는 등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KBS, MBC)의 이사 추천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 방송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기타\_\_\_\_\_

후보명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에 대하여
이재명	① 찬성한다.
윤석열	③ 기타 (이사 선임에 있어 추천 정당의 영향력에 따른 정파성을 배제하고 국민의 대표성을 더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직역, 지역, 성별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선임하는 것이 요구됨.)
심상정	① 찬성한다.

10-1.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언론 관계법의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기타\_\_\_\_\_

후보명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언론 관계법의 개정에 대하여
이재명	① 찬성한다.
윤석열	③ 기타.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법적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기존의 뉴미디어를 뛰어넘어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미디어들이 국경을 넘어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경직된 규제를 담은 현행 법의 개정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보여짐.)
심상정	① 찬성한다.

10-2. 찬성하신다면, 이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공약은 무엇입니까?

후보명	언론 관계법 개정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공약은
이재명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장 선출방식은 개선해야 합니다. 그간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권한을 갖는 이사회가 여야 정치권의 권력에 의해 KBS는 7대4, MBC는 6대3의 비율로 관행을 통해 구성되었습니다. 이런 구조가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방송 장악'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공영방송 사장은 주권자인 국민대표가 참여하는 국민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이사 후보자를 추천해 선출하도록 해 임명권을 국민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보도·

	<p>제작·편성권과 경영의 분리 원칙 법제화, 사업자와 종사자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국민이 참여하는 시청자위원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 등을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합니다.</p> <p>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법적지위는 물론 공적책무의 이행체계를 명확히 법적으로 규정하는 등 지배구조 문제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p>
윤석열	
심상정	<p>1) 국민의 손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출, 사장 추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대 양당이 법적 근거도 없이 행사해 오던 공영방송 이사 임명의 관행을 국민 선출로 개선</li> <li>○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균형있게 선정한 ‘이사추천국민위원회’ 설치</li> <li>○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후보자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고 투표를 통해 이사 선출</li> <li>○ 국민이 선출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공영방송 사장 추천</li> </ul> <p>2) 편집(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문사의 편집위원회 설치, 편집규약 제정 의무화로 신문 제작과 편집의 자율성, 독립성 보장</li> <li>○ 방송사의 편성위원회 설치, 편성규약 제정 의무화로 편성의 자율성, 독립성 보장</li> </ul> <p>3) 언론 자율규제기구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제적 방식의 언론 규제는 민주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규제 우선 추진</li> <li>○ 이용자인 시민과 언론인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언론 자율규제기구 구성</li> <li>○ 언론 자율규제기구의 법적 지위 보장 및 운영 지원</li> <li>○ 포털 등의 사업자가 뉴스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자율규제기구 참여 의무화</li> </ul> <p>4) 지역언론 진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미디어바우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이 직접 건강한 지역언론 지원</li> </ul> </li> <li>○ 정부광고 집행 기준에 지역성, 미디어 다양성 관련 항목 강화</li> <li>○ 전체 정부광고 집행액의 일정 비율 이상 지역언론에 집행</li> <li>○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 확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강화</li> <li>○ 포털 등에서 지역언론 뉴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자 위치기반 뉴</li> </ul>

	<p>스서비스' 도입</p> <p>5) 미디어 노동자 노동권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li> <li>○ 평등수당: 비정규직 계약종료수당, 보상수당, 1년 미만 계약 노동자 퇴직금 지급</li> <li>○ 미디어 기업의 근로감독 정례화</li> <li>○ 방송사업자 등의 재허가 심사기준 및 배점에 노동권 관련 항목 강화</li> <li>○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근로계약 의무화</li> <li>○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공적재원의 지원을 받는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 성폭력 및 산업재해 방지 조치, 임금체불 시 제재 등 공적 의무부과</li> </ul> <p>6) 시청자의 참여와 권리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DMB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 위원 선임을 시청자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또는 방송사 노사 동수 추천으로 개선</li> <li>○ 시청자위원회의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자 불만 처리, 방송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연간 평가 등 시청자 의견수렴 기능 확대</li> </ul> </li> <li>○ 유료방송(케이블방송, IPTV, 위성방송) 시청자위원회를 지역별로 구성하도록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에 채널편성, 방송상품 구성, 이용약관 등에 대한 심의 권한 부여</li> </ul> </li> </ul> <p>7) 미디어 거버넌스 재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의 독립성, 미디어의 공공성,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보장을 위한 미디어 정책기구와 미디어 생태계 재구축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li> </ul>
--	---

[경제 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일정한 사회 집단을 위하여 온갖 물질 재화를 지나칠 정도로 확보해 주는 것은 사람들을 자치하면 ‘소유’의 노예, 즉각적인 충족의 노예로 만든다”(『간추린 사회 교리』, 334항).

“경제 활동은 공동선의 추구를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 공동체가 공동선에 대한 책임을 맡아야 합니다. 따라서 경제 활동을 단순히 부의 창출 수단으로 여기고 정치 활동을 재분

배를 통한 정의 추구의 수단으로 여겨, 경제 활동과 정치 활동을 분리할 때 심각한 불균형이 야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진리 안의 사랑』, 36항).

11. 경제 민주화는 그 정의가 단일하지는 않지만, 헌법 119조 2항(“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은 소득 재분배와 독점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가 경제 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얼마나 실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와 관련한 견해는 어떠하며, 이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명	경제 민주화와 이를 위해 시행해야 할 정책에 대하여
이재명	<p>경제 민주화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경제 운용의 원리입니다. 이제는 선거용 구호로서의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민주화를 달성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준비한 정책 기조는 ‘공정성장’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정책 기조인 ‘전환적 공정성장’의 두 뼈대가 전환성장과 공정성장입니다. 전환성장이란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확충에 선투자하고, 핵심 기술역량과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입니다. 공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과 같은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 전국민 고용보험·산재보험과 같은 안전망, 납품단가 연동제 등과 같은 시장 주체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조치들, 지역간·경제주체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p>
윤석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는 공정한 경제체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그 의미는 다음의 세 가지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자유 시장경쟁의 결과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지는 체제</li> <li>② 구성원에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체제</li> <li>③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체제.</li> </ul> </li> <li>○ 경제민주화는 1인 1표제의 민주정치 원리를 경제에 적용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③에 가깝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으나 헌법 119조 전체를 고려하면 ①~③을 포괄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함</li> <li>○ 저는 국민과의 약속을 통해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여 성</li> </ul>

	<p>장률 상승과 출생률 증가, 소득분배 개선이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분배를 단순히 가진 사람에게서 빼앗아 저소득자에게 나눠주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성장과 사회변화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면적, 심층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함</li> <li>o 독과점 규제나 갑의 횡포로부터의 보호 역시 제가 추구하는 공정혁신경제 수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엄정하게 추구해 나갈 것임</li> <li>- 다만 경쟁 활성화와 약자의 공정한 제몫 찾기라는 본질이 중요하며, 무조건 강자를 끌어내리는 식의 접근은 지양할 것임</li> </ul>
<p>심상정</p>	<p>우리사회의 경제력 집중, 독점, 양극화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기존에 있었던 경제력 집중 뿐 아니라 산업변화에 따른 거대 플랫폼 기업 등의 새로운 경제 독점 세력이 출현하고 있음. 따라서 경제민주화는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유효한 과제임.</p> <p>그동안 경제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 제안했던 경제 정책 뿐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산업 환경에 맞는 정책 대안도 필요한 상황임.</p> <p>새롭게 독점 세력화 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독점 방지를 위한 법안 제정이 우선적으로 시행 되어야 할 것임. 또한, 기존 재벌에 집중된 경제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계열분리·기업분할 명령제 도입도 필요함. 또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체제 마련을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납품업체들의 집단교섭 보장 및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증거개시제도 등의 도입도 필요함.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최고임금제 도입도 필요함</p>

11-1. 자산 소득의 증가 속도가 노동 소득의 증가 속도를 압도해 버리는 현재의 구조에서 양극화의 문제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후보명	양극화 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p>이재명</p>	<p>대표적인 빈곤 지표인 지니계수로 보면 한국은 정부가 시장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수준이 낮습니다. 정부가 지금보다 분배에 직접적으로 나서 시장에서의 불평등을 개선해야 합니다. 과거엔 기업을 지원하면 자연스레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에 확대될 것이란 낙수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소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진시키는 정책, 이른바 수요 위주의 정책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p>

	<p>대표적인 정책들로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 등이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으로 청년시기 미래를 위한 준비의 기회를 부여하고,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으로 창작활동에 대한 꿈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게 하고, 농어촌기본소득으로 농어촌과 도시 간의 소득격차 해소를 지원 추진하고자 합니다.</p> <p>최대 1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할 수 있는 기본대출권을 청년부터 보장해 그 대상을 확대하고, 311만호 주택공급 등을 통해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택가격 안정화·전월세 가구 보호 확대 등으로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양극화 개선 추진하고자 합니다.</p> <p>복지 정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최저생활 보장 수준을 현재의 중위소득 30%에서 단계적으로 50%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초연금의 확대, 장애인연금과 수당의 확대, 장년수당 도입 및 아동·청소년 수당 확대 등 복지 정책의 개편을 통해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려고 합니다.</p> <p>2차 분배뿐 아니라, 공정임금제, 비정규직 공정수당,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 등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 완화하려는 노력도 병행할 것입니다.</p>
<p>윤석열</p>	<p>경제적 양극화는 자산 양극화와 소득 양극화로 나누어 볼 수 있음.</p> <p>자산측면에서는 주택가격의 급등이 양극화를 초래한 주원인이므로 주택가격의 안정이 최우선 과제임. 이를 위해 공급과 세제, 금융 측면에서 다양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p> <p>소득측면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 외에도 고령화와 고용부진에 따라 노동소득의 분배가 악화하고 있음. 결국 소득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임. 하지만 재정에 의존하여 저임금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음.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을 경제정책의 우선 목표로 삼고 있음.</p> <p>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경쟁을 해치는 불공정 행위 엄단을 통해 공정성을 확립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및 고용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며,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는 등 민간의 자율성 제고를 통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음.</p> <p>이를 통해 얻게 되는 생산가치를 많은 어려운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복지체제를 두텁게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하고 생산적인 경제체제를 만들겠음.</p>

심상정	<p>우리나라 자산 소득의 가장 큰 요인인 부동산 불로소득 일 것임. 땅을 이용한 투기 소득을 제2의 토지개혁' 등을 통해서 근절 할 것임. 이를 위해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도입하고, 개발이익환수제도 강화를 통해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엄격히 환수하겠음.</p> <p>불평등 극복을 위해서 소득 보장 정책도 함께 추진 할 것임. 소득 보장 정책은 2가지 축으로 구상하였음. 하나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시민의 노동권을 강화하는 것임. &lt;일하는 시민을 위한 신노동법&gt;으로 '일하는 시민 모두'가 노동권을 갖도록 할 것임,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과 최소노동시간보장제를 도입할 것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 위해서 '성평등임금공시제'와 '최고임금법'을 확실히 도입할 것임.</p> <p>다른 하나는 '국가를 통한 소득보장'인 &lt;시민평생소득&gt;임. 모든 시민에게 &lt;시민최저소득 100만원&gt;을 보장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lt;전국민소득보험&gt;을 완성할 것임. 또한, 시민의 사회적 역할을 지원하는 &lt;범주형 기본소득&gt;을 도입할 것임.</p>
-----	--

[경제와 공동재화]

“국가는 공동재화를 옹호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공동재화들은 시장의 메카니즘만으로 보호할 수 없는 자연환경 및 인간환경을 말한다. 원시자본주의 시대에 국가가 노동의 기본 권리를 보호해야 했듯이,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에 국가와 사회는 공동재화를 보호해야 하는데, 이 공동재화는 각 개인의 삶의 필수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각 개인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정당하게 성취할 수 있다”(『백주년』, 40항).

12. 의료, 철도, 에너지 등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및 사회공공성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기타\_\_\_\_\_

후보명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및 사회공공성 확대에 대하여
이재명	① 찬성한다.
윤석열	③ 기타. 공공재는 특성 상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적절하게 공급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p>많은 부분을 정부나 공기업을 통해 공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의료, 운송, 에너지 부문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에 기반하여 빠른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혁신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낮은 가격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실례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은 공공의료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디지털 기술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 운송, 에너지 부문의 공공성을 중요하게 인식함과 동시에 기술혁신을 통해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문이 되도록 변화를 촉진시키겠습니다.</p>
심상정	① 찬성한다.

12-1. 찬성하신다면, 이에 대한 핵심적 정책공약은 무엇입니까?

후보명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및 사회공공성 확대를 위한 핵심적 정책공약은
이재명	<p>1) KTX와 SRT 통합</p> <p>2)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추진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설립</p> <p>3)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공공병원 확보</p>
윤석열	
심상정	<p>건설, 교통 등 SOC 사업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 확대 금지, 민간 특혜를 폐지함</p> <p>공공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를 확대 할 것이고 감염병 대응체계도 구축 할 것임. 또한, 병원비는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확대 할 것임. 공공이 책임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도 실현할 것임.</p> <p>교통 분야는 도심을 중심으로 거리에 따라 구역을 정하고, 구역 내에서 교통수단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반값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도입 할 것이며, 버스 완전공영제도 도입할 것임.</p>

[공공복지 확대]

“재화의 보편적 목적의 원칙은 가난한 이들, 소외받는 이들, 어느 모로든 자신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는 생활조건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가난한 이들에 대

한 우선적인 사랑과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내리는 결정은 당연히 수많은 굶주리는 사람들과 곤궁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간추린 사회 교리』, 182항).

13. 의료 보장성 강화, 국가 책임 보육, 보편적 기초연금 등 복지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기타\_\_\_\_\_

후보명	공공복지 확대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재명	① 찬성한다.
윤석열	① 찬성한다.
심상정	① 찬성한다.

13-1. 찬성하신다면, 이에 대한 핵심적 정책공약은 무엇입니까?

후보명	공공복지 확대를 위한 핵심적 정책공약은
이재명	<p>의료 보장성 강화: 탈모, 임플란트, 희귀난치병 등 의료 보장성 확대            국가 책임 보육: 초등, 영·유아 돌봄 국가 완전 책임제            보편적 기초연금 : 장년수당 신설, 현재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대상을 더 많은 어르신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 공제 도입 추진. 부부 동시 수급에 따른 감액규정 폐지</p>
윤석열	<p>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삶의 위기에 놓인 국민을 지원하며, 우리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 확대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한 핵심 정책공약은 크게 세 꼭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p> <p>첫째, 전반적 사회보장체계가 구축되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취약한 국민의 삶을 탄탄하게 챙기는 것부터 책임 있게 지원하고자 합니다.</p> <p>이를 위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소득환산제에 재산 컷오프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기초 수급 가구 중, 장애인, 노인,</p>

	<p>아동,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에 월10만원을 추가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액 결정 시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를 50%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대상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정책을 추진하고,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래 사는 노후가 불안하지 않도록 기초연금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p> <p>둘째, 윤석열 후보는 “만 0-5세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제 실현”을 통해 영유아 단계의 출발선부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겠다, 양육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겠다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0-12개월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을 통해 모든 영유아가 격차 없이 동일하게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유아에게 하루 세끼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p> <p>셋째,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시급한 과제인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 저출생 문제 등을 풀 수 있는 핵심 전략은 사회서비스입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는 단지 소득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의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해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해 나가하고자 합니다.</p> <p>사회서비스 틈새 개발, 복지기술(welfare technology) 개발 및 활용을 통한 새로운 사회서비스 발굴, 사회적 경제 영역과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분야의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사회서비스 규모화는 결과적으로 불평등 완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p> <p>또한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국가의 지원도 확대하겠지만, 정부예산만으로는 한계적이기 때문에, 기업과 사회적 금융 투자, 정부 기금 등으로 사회서비스 혁신기금을 조성하고,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를 다원화하고 민간과 기업의 사회서비스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경제적 불평등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p>
<p>심상정</p>	<p>○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원에서 제공되는 예비급여는 모두 포함</li> <li>- 효과와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급여에서 탈락한 행위, 약제, 재료</li> </ul>

	<p>등의 비급여는 건강보험 진료 포함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 보장률 오이시디(OECD) 평균인 80%까지, 입원 보장률은 90%까지 확대</li> <li>- 총액 관리 방식의 지불제도 도입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li> <li>○ 친환경 국공립보육 50% 확대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li> <li>- 신축 지원단가 실제 건축비 수준으로 대폭 인상</li> <li>- 지역별 국공립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집중 지원대책 마련</li> <li>- 어린이집 기자재, 장난감 등 친환경 리모델링, 친환경 급식 제공</li> <li>- 국공립 수준으로 보육교사 임금 인상, 이후 유치원 수준으로 임금 단계적 인상</li> <li>-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초과보육 완전 폐지</li> <li>- 원장 담임겸직 폐지, 보육교사 확충으로 업무시간, 휴게시간 등 확보</li> <li>○ 기초연금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li> </ul>
--	---

[기본소득]

14.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액을 지원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몇 해 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회성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미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재원 마련과 지급액 책정 등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액을 지원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기타\_\_\_\_\_

후보명	기본소득에 대하여
이재명	① 찬성한다.
윤석열	② 반대한다. ‘기본소득’과 같은 무조건적인 현금복지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기본소득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경제나 복지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정작 어려운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가 축소될 수 있는 공산이 큼니다. 높은 빈곤율, 사회적 위험 증가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현재 어려운 상황에 놓인 다양한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해 책임 복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한 국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은 13번 질문에 대한 답변

	에 답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심상정	③ 기타 (시민의 사회적 역할을 지원하는 <범주형 기본소득> 도입)

14-1. 찬성하신다면, 이에 대한 핵심적 정책공약은 무엇입니까?

후보명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핵심적 정책공약은
이재명	<p>1) 전국민 보편기본소득 추진 -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의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 동의를 받아 연 25만원 시작으로 하여, 임기말 연 100만원을 목표로 추진 전국민 대상 지급</p> <p>2) 청년기본소득 지급 - 2023년부터 만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 지급 추진</p> <p>3)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지급 -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 단계적 지원 추진</p> <p>4)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 및 주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내 지급</p> <p>5) 아동수당 확대 (만0~12세) - 현행 만8세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12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p> <p>6) 청소년수당 신설 (만13~18세) - 만13~18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120만원 지급 추진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p> <p>7) 장년수당 지급 - 만 60세 퇴직 이후부터 공적 연금 수급 전까지 연간 120만원 장년수당 지급</p>
윤석열	
심상정	

## [부동산]

15.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은 자산 축적의 수단 이전에 주거 대상으로서, 삶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말처럼, 부동산은 주거 대상 이전에 자산 축적의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부를 축적하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내 집 장만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투자 대상 이전에 보

금자리로서 부동산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기타\_\_\_\_\_

후보명	개혁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이재명	① 찬성한다.
윤석열	<p>③ 기타. 주택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계자산의 가장 큰 항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현재 가계자산의 73%가 부동산이고 여기에는 거주 주택 45%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주택이 거처를 제공하는 내구소비재인 동시에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투자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지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집값이 안정된 시기에는 사람들이 주택구입에 소극적인 반면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면 적극적으로 구입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5년경까지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가 지배하던 시기에는 정부가 주택구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반응하지 않았던 반면 최근 몇 년 동안에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자 이른바 영끌 현상까지 나타난 것은 좋은 사례입니다.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시장상황에 따라 사람들의 행태가 바뀐 것입니다.</p> <p>결국 집값이 안정되면 투자수요가 진정될 것이고 거주 목적을 투자목적보다 앞세우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정책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주거수준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250만호, 수도권 130만 이상 최대 1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되 재개발 재건축, 국공유지 등의 복합개발로 수요가 많은 도시 내 주택공급을 늘리고 수도권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공공택지를 개발하여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대출규제, 부동산세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거래되며 소유하는데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입니다.</p> <p>한편 시장에서 자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5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급여 수준도 현실화하여 이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아놓은 자산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들에게는 청년원가주택 30만호와 역세권첫집주택 20만호를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구입자금의 80%를 장기대출로 제공하여 내집 마련 시기를 앞</p>

	당겨 주거안정과 건전한 재산형성이 가능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심상정	① 찬성한다.

15-1. 찬성하신다면, 이에 대한 핵심적 정책공약은 무엇입니까?

후보명	개혁적인 부동산 정책을 위한 핵심적 정책공약은
이재명	1) 튼튼한 주거사다리를 놓아 청년,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집걱정 완전 해소 2) 전국 311만호(서울 107만호)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 실현 3)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급,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로 ‘반값아파트’ 공급 4) 기본주택 140만호 공급(장기임대형 80만호+분양형 60만호) - 분양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의 부담능력과 선호에 맞춰 건물분양형, 이익공유형, 누구나집형, 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맞춤형으로 공급하여 선택권 확대
윤석열	
심상정	○ 제2의 토지개혁 - 부동산 불평등 해소·투기 근절 - 토지초과이득세 도입(개인·법인 보유 유휴 토지에 대해 지가 초과상승분 50% 중과세) -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부동산 세제 강화(종부세,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 각종 개발사업 초과개발이익 50% 이상 환수, 민자사업 투자액 대비 상한제 실시 - 주택소유상한제 도입(2주택 세금 중과세, 3주택 이상은 소유 제한) -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정치 -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

“정치 책임자들은 정치적 대표성의 도덕적 차원, 곧 국민의 운명과 온전히 함께하며 사회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망각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책임 있는 권위란 봉사의 정신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덕목들(인내, 겸손, 온건, 애덕, 함께하려는 노력)에 따라 행사되는 권위, 명예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동선

을 활동의 참된 목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행사하는 권위를 의미한다”(『간추린 사회 교리』, 410항).

오늘날 일반화되어 있는 “민주주의 제도의 가장 심각한 결함 가운데 하나는 도덕 원칙과 사회 정의 규범을 한꺼번에 짓밟는 정치적인 부패”(간추린 사회 교리, 411항)이며, 부패의 대표적인 형태는 “뇌물, 횡령, 권력 남용, 관직 비호”(DOCAT, 194항) 등입니다. 이러한 “부패의 무도한 탐욕은 약자의 미래 계획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가장 가난한 이들을 무참히 짓밟아 버립니다”(『자비의 얼굴』, 19항).

16. 이른바 ‘사법농단’으로 말미암은 전직 대법원장과 두 명이 전직 대법관, 그리고 사법부의 고위급 판사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의 불의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였고, 사법 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법 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기타 \_\_\_\_\_

후보명	사법 개혁에 대하여
이재명	① 찬성한다.
윤석열	③ 기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사법 재판, 행정과 관련하여 그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소수에 권한과 책임이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생각(이른바 ‘사법농단’이라는 것도 상고법원 문제로 시작되었듯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판에서도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현재의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비롯한 배심제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 사법정책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통합가정법원이나 해사법원 등도 재판에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실질적인 사법개혁 방안의 하나로 독과점화된 재판 구조를 탈피하여 다양성과 민주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임.
심상정	① 찬성한다.

16-1. 찬성하신다면, 이에 대한 핵심적 정책공약은 무엇입니까?

후보명	사법 개혁을 위한 핵심적 정책공약은
이재명	법원행정처 개혁, 법원에 대한 국민평가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

윤석열	
심상정	<p>(1)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체와 법원 민주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법행정회의’ 도입으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소</li> <li>○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li> <li>○ 공정한 인사제도를 위해 평판사가 참여하는 법관 인사위원회 설치 및 인사권 단계적 이양(고등법원 → 지방법원)</li> <li>○ 고등 및 지방 법원장 평판사 선출제 도입</li> </ul> <p>(2)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다양성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호사 자격 없는 법학교수와 법률 전문가의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자격 인정</li> <li>○ 헌법재판관 국회 동의 절차 의무화</li> <li>○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확대(3인 → 5인)와 국회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설치</li> <li>○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여성 비율 1/3 이상 의무화</li> <li>○ 판사와 검사 출신 헌법재판관 인원 제한</li> </ul> <p>(3)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비리 척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호사법」 개정으로 전관예우 및 법조비리 변호사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 신설 및 양형에 따라 변호사 자격 정지 내지 박탈</li> <li>○ 판검사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제한 기간 연장</li> <li>○ 미선임된 변호사의 변론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수임 제한 기간 연장, 신고대상 확대, 연고관계 선전금지</li> </ul>

17.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대한민국 검사 선서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검찰은 이 선서문과는 상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검찰 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기타\_\_\_\_\_

후보명	검찰 개혁에 대하여
이재명	① 찬성한다.
윤석열	① 찬성한다.
심상정	① 찬성한다.

17-1. 찬성하신다면, 이에 대한 핵심적 정책공약은 무엇입니까?

후보명	검찰 개혁을 위한 핵심적 정책공약은
이재명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재정신청제도의 개선, 수사절차법제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
윤석열	<p>현정부의 검찰 개혁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검찰개혁에 동의하는 것임.</p> <p>현 정부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한 바 있음,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할 것임.</p> <p>또한 현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밀어붙이면서 수사시스템과 역할분담에 대한 고민 없이 사건처리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국민 불편이 가중됨. 경찰 송치사건의 경우 경찰의 수사 및 검찰의 보완수사에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수사지연과 부실수사를 막을 수 있도록 현행 수사체계를 유지하면서 '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와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로 절차를 단순화하겠음. 검사들이 처음부터 수사를 해야하는 사건에 한정해서만 직접 수사를 하고 나머지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받아서 기소와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p>
심상정	<p>(1) 국가수사체계 개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범죄수사 체계 개편 완수를 위한 국회 추진기구 설치</li> <li>○ 공수처, 검찰의 수사권 통제를 위한 ombudsman제도 도입</li> <li>○ 공수처 수사권과 기소권 일치 및 수사대상 축소</li> </ul>

[노동 - 정의로운 전환(일자리 구조 변화)]

“인간의 노동이 표현되는 역사적 형태는 변화하지만, 노동자들의 양도할 수 없는 인권에 대

한 존중으로 요약되는 노동의 조건은 영구불변이다. 그 변화가 실질적인 것일수록, 다양한 차원에서 관련 제도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동의 존엄을 수호하는 지혜와 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모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현재의 변화가 지역 경제와 세계 경제 차원, ‘구’ 경제와 ‘신’ 경제, 기술 혁신과 인간 노동을 보호할 필요성, 경제 성장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발전 등이 서로 보완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 이는 매우 절실하다. - 최선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이끌 수 있다”(『간추린 사회 교리』, 319항).

“인류를 배제하지 말아야 하는 온전한 생태론에 대한 모든 접근에서 노동의 가치를 포함시키는 것은 필수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는 회칙 「노동하는 인간」에서 이를 잘 설명하셨습니다. (...)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 사람들 두시어, 그곳을 보존하게(돌보게) 하셨을 뿐 아니라 열매를 맺도록(일구도록)하셨습니다. (...)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의 사회 현실은, 편협한 기업 이윤과 모호한 경제적 합리성을 뛰어넘어, ‘계속하여 모든 사람의 안정된 고용 보장을 최우선 과제’(『진리 안에 사랑』, 32항)로 삼을 것을 요구합니다. ... 노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동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에 속하며, 성장과 인간 발전과 개인적 성취의 길입니다”(『찬미받으소서』, 124항; 127-128항).

18. 탄소중립과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고탄소 산업의 정체와 축소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산업구조 전환이 지연되고 구조적 실업 증가와 같은 사회적 갈등이 심화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2021년 8월 5일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구조 변화 대응 방안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후보명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구조 변화 대응 방안
이재명	① 있다.
윤석열	① 있다.
심상정	① 있다.

18-1. 일자리 구조 변화 대응 방안이 있으시다면, 간략히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명	일자리 구조 변화 대응 방안은
이재명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의로운 전환’ 방향과 원칙 그리

	<p>고 유럽연합(EU)의 ‘정의로운 전환계획’(Just Transition Scheme)을 반영한 한국형 ‘정의로운 전환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p> <p>무엇보다 괜찮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의로운 노동전환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환과정에서 차별과 소외가 발생 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과 장기유급훈련 등 이행계획이 가능하도록 노동전환 지원 기금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취약노동자에게는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과 맞물려 「노동전환지원법」 제정을 서두르겠습니다.</p> <p>더불어 석탄화력발전, 내연자동차 등 고탄소 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산업 전환 과정에서 지역경제와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들 지역을 선제적으로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지역경제와 지역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산업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일구어내는 새로운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또한 전환기 산업과 일자리 변화를 분석하고, 녹색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는 숙련연계(skill connect) 프로그램까지 포괄하는 ‘정의로운 전환 플랫폼’을 마련하겠습니다.</p> <p>탄소중립 추진은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와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의 탄소중립위원회에 노동자 및 지역 시민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논의·추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 즉, ‘우리 모두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하고 정의로운 노동전환 이행 및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로운 노동전환’컨트럴 타워를 구축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정의로운 노동전환 로드맵’마련</li> <li>- 중앙 및 지역에 ‘정의로운 노동 전환 지원센터’네트워크 구축 및 특별지구 지원 실질화</li> <li>- 전환대상 기업 노동자 및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사회안전망 제공과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한 기후대응기금 실질적 지원</li> </ul> </li> <li>○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체계’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사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노·사 주도 훈련 지원 등 노동전환 이행력 담보</li> <li>- 장기유급휴가훈련과 노동전환지원금 확대하고 노동전환지원법 개정</li> <li>- 규제 특례와 사업전환지원금 확대를 통한 기업의 사업전환 지원</li> <li>- 선제적으로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정해 지역경제 회복과 산업전환 지원</li> </ul> </li> </ul>
윤석열	첫째, 정의로운 전환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칭) 「산업구조 재편에 따

	<p>른 공정노동전환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p> <p>둘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별·지역별 현장에 공정노동전환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여 맞춤형 교육훈련, 전직 지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p> <p>셋째, 디지털 전환,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실업급여의 ‘개별연장급여’제도, ‘지역·산업 특별연장급여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p> <p>넷째, 공정한 노동 전환을 위한 다층적 사회적 대화 체계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전환 과정에서 노사갈등 예방과 공정 전환을 위한 원하청-협력사간 전환협약 체결을 권고하고, 기업·산업·지역·업종·직종별 긴밀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여 정의로운 전환에 모두가 함께 하도록 상생협력체계를 제도화하겠습니다.</p> <p>다섯째, 중장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적용 대상을 현재의 1,000인 이상 기업에서 500인 이상, 300인 이상 기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중장년 재도약 보장패키지’ 도입하여 중장년의 재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p>
<p>심상정</p>	<p>(1) ‘노동전환지원법’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탄소 산업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재교육 및 재취업 지원 근거 마련</li> </ul> <p>(2)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위원회’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지역-산업 차원에서 노동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전환 과정과 방향 공동 결정</li> <li>- 전환비용과 부작용이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li> </ul> <p>(3) 녹색산업 중심 과감한 투자로 일자리 창출하는 ‘그린노믹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대 녹색산업(재생에너지, 배터리, 전기차, 수소경제, 생태농산어업)에 집중 투자</li> <li>-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하고 2030년까지 500조원의 대규모 투자 단행</li> <li>- 재정긴축에 구속되지 않으며, 녹색 R&amp;D 예산 매년 3조원 배정</li> <li>- 재생에너지 30만개, 그린리모델링 10만개, 그 외 10만개로 총 50만개 녹색 일자리 창출</li> <li>- 기존 탄소산업 노동자들을 녹색산업의 새 일자리로 전환</li> </ul> <p>(4) 국가일자리보장제로 100만개 일자리 창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전환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일자리로 기획</li> <li>- 생활임금과 사회보험, 교육훈련, 이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보장</li> </ul>
--

**[청년실업과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완전고용’은 정의와 공동선을 지향하는 모든 경제 체제에서 의무적인 목표이다. 노동권이 방해받거나 제도적으로 부인되는 사회, 노동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수준의 고용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제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회는 ‘윤리에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사회적 평화를 달성할 수도 없다’(『백주년』, 43항). 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 따라서 특별하고 막중한 책임이 … 국가나 국제 차원에서 노동 정책이나 경제 정책들을 지시하는 위치에 있는 주체들 - 개인이나 다양한 유형의 기관들 - 에게 돌아간다”(『간추린 사회 교리』, 288항).

“노동은 가정을 이루고 유지하기 위해서, 재산을 갖기 위해서, 인류 가족의 공동선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노동 문제가 사회 생활에 미치는 도덕적 영향을 고려할 때, 교회는 실업이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에게는 ‘실제로 사회의 재앙’(『노동하는 인간』, 18항)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간추린 사회 교리』, 287항).

“고용문제는 적극적인 고용 정책을 증진할 의무가 있는 국가의 책임을 요구한다”(『간추린 사회 교리』, 291항).

19. 청년층 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합니다. 좋은 일자리 감소와 기업의 경력직 중심 인력 채용 등으로 원하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상실감이 큰 가운데,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에서는 청년층 유출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편 취업 기회가 없는 지역 청년들의 어려움도 큼니다.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 차원 접근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후보명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
이재명	① 있다.
윤석열	① 있다.
심상정	① 있다.

19-1. 구상하시는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명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
이재명	<p>지역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점 정책이 있습니다. 첫째, 지역인재 양성 체계입니다. 좋은 인재가 있어야 좋은 일자리를 가진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대학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대학에 기업,연구소가 직접 입주하여 산학연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맞춤형 인재를 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어도 정주여건이 좋지 않으면 수도권으로 탈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국을 5극 3특으로 만들겠습니다. 부울경 , 호남 , 충청 , 대경을 통해 수도권보다 더 좋은 정주여건을 갖춘 초광역단위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주거, 교통, 문화, 여가가 갖춰진 환경이라면 좋은 인재가 좋은 일자리에 몰릴 것입니다.</p>
윤석열	<p>지역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및 혁신창업을 대폭 지원하여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협업하여 청년들이 도약할 수 있는 청년베이스캠프를 만들어 청년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년들의 일, 삶, 여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주거를 비롯해 정주여건을 개선할 것입니다.</p> <p>전국에 지역특화형 “청년도약 베이스캠프” 설치하고, 청년도약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달체계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대학을 창업 전진 기지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지역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채용여건을 보다 확대하겠습니다.</p> <p>원하는 모든 청년에게 “청년도약서비스” 제공하여, ① 직업역량 지원(진로 탐색, 커리어 개발, 구직, 취업, 창업, 사회공헌(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위한 상담·교육·훈련 연계), ② 생활역량 지원(기초적인 노동 상담, 연말정산 등 세무 상담, 전월세계약 상담, 맞춤형 정보제공 및 지원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p> <p>“지역 맞춤형 청년 멘토링단” 운영해 멘토링(mentoring)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기업의 청년 지원 멘토링 참여를 통한 사회공헌을 유도하겠습니다.(기업 인센티브 부여)</p> <p>“청년 일경험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업의 좋은 일경험 프로그램을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청년의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멘토링을 강화하여 구직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지역 스타트업에서 지역 청년들이 인턴십과 기업 맞춤형 일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할 것입니다.</p>

심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일자리보장제로 청년 일자리 30만개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만 15~34세 청년 누구나</li> <li>- 내용 : 생활임금, 사회보험, 휴가, 연간 50시간 직무역량교육, 이직 서비스 제공</li> <li>- 방식 : 시군구별 일자리보장위원회와 일자리보장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거리의 목록화 (일자리은행)</li> <li>·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들과 매칭 및 관련 교육훈련 후 배치</li> </ul> </li> <li>- 유형 : 국가,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고용주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시) 공공+기업+시민사회 새로운 일자리 창출(광주형 상생일자리의 경우) 일손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시민사회에 인력 파견(서울시 청년뉴딜사업의 경우)</li> </ul> </li> <li>- 일의 종류 : 녹색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공익적 일자리 중심으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시) 지역 필수 돌봄 일자리(동네 키움센터, 상담재활 전문가 등), 탈탄소 녹색 일자리(재생에너지 설비 제작, 그린리모델링 등)</li> </ul> </li> </ul> </li> </ul>
-----	--

[5인 미만 사업장 차별과 근로기준법 개정]

<p>“노동자의 권리는 다른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과 탁월한 인간 존엄에 바탕을 둔다. … 보호받고 적절히 대변되지 못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슬픈 현실이 확인해 주듯이, 이러한 권리들은 흔히 침해되고 있다”(『간추린 사회 교리』, 301항).</p> <p>“이전에는 대기업들에서 맡던 여러 생산 작업들을 소규모 업체들에 나누어 주는 생산의 탈집중화는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 그러나 이러한 부문들에는 부당한 대우와 박한 임금,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가 따르는 노동의 사례가 드물지 않다. (...) 이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매우 비참한 노동조건에서, 노동자의 존엄을 보호하는 법령이 미비한 가운데 일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생산과 임금 수준, 생활수준이 매우 낮으며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간추린 사회 교리』, 315-316항).</p> <p>“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부녀 노동자는 남자와 같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교회는 항상 지지해 왔다. 값싼 임금 때문에 여성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부정이며 공익에 어긋난다”(교황 비오 12세의 이탈리아 가톨릭 여성 노동자에게 하신 말씀, 1945. 8. 15.).</p>
---

“노동의 가치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지, 국적이나 종교 또는 인종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커다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민들 스스로 느끼는 절박한 처지를 착취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노동하는 인간』, 23항).

20. 최근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계는 최저 수준의 노동조건 확보라는 노동 기본권 실현의 측면에서 즉각 확대할 것을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인사관리 비용 증가 등 영세기업의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고, 법 적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력의 확보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확대에 반대한다.
- ② 확대에 찬성하나 당분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
- ③ 즉각 확대 적용해야 한다.

후보명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하여
이재명	③ 즉각 확대 적용해야 한다.
윤석열	② 확대에 찬성하나 당분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
심상정	③ 즉각 확대 적용해야 한다.

20-1. 선택한 응답에 대한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명	
이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제 보호대상 단계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관계법령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단계적 적용</li> <li>- 근로시간 적용 제외 및 특례업종 관련 규정 개선</li> <li>- 근로자성 추정 규정 신설 및 입증책임 전환</li> <li>- 무기계약전환 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 근거마련</li> </ul> </li> <li>○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확대 관련,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고 이들 간의 전쟁이 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것임</li> </ul>

<p>윤석열</p>	<p>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동의하지만, 근로시간, 법정수당, 해고규제 등 적용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의 인력운영 부담이 급증하게 될 경우 해당 산업과 노동시장에 미칠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으므로 신중하게 적용을 확대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p> <p>일단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는 규정부터 적용을 확대하고, 법정수당이나 해고규제 등 비용이 발생하는 규정들은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p>
<p>심상정</p>	<p>직종이나 업종의 특성은 전혀 파악하지 않고 사업장 규모(상시 사용 노동자 수)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배제하는 것의 합헌성을 영세 사업장 사용자의 법 준수 능력의 미비나 국가의 행정감독능력의 한계에서 찾는 것은 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모두 영세하다고 전제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경영 상태는 제각각입니다.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여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예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의 ‘자영업 현황분석’(2016. 12. 22.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한 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의 연간 매출 규모는 1억 5천만 원 내지 3억 원 범위이고, 4명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68.1%는 연간 3억원 이상입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영 상황은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4인 고용 사업장과 5인 고용 사업장의 매출 규모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5인 미만, 5인 이상의 기준은 작위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p> <p>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의 근거로 근로감독의 어려움도 자주 지적되었습니다. 근로감독의 한계가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은 차지고서라도, 실제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때 근로감독은 더욱 편이하고 강력하게 집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과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서로 얽혀 있다 보니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면 근로기준법의 의미와 효과도 새삼 강조될 것입니다.</p> <p>우리나라의 낮은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고려한다면 집단적 자치규범을 통한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는 상당히 어려운바, 결국 영세 사업</p>

	<p>장 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의 강제적 적용이 사실상 유일한 노동조건 보호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므로 빠른 논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합니다. 양당의 전권을 쥐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당 뒤에 숨지 말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밝혀야 합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모든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	---

**[노동 안전과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p>“국가의 법과 제도는 “임신에서부터 자연사에 이르는 생명의 권리를 결코 훼손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것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한다”(『간추린 사회 교리』, 231항 참조).</p> <p>“건강 보호를 위한 비용, 특히 노동 중에 일어나는 사고의 경우, 의료 혜택이 노동자를 위해 쉽게 베풀어져야 하며, 가능한 한 그 혜택은 저렴하거나 무상이어야 한다. 다른 측면은 휴식의 권리와 관련된 분야이다. … 사회 보장의 셋째 분야는 연금의 권리와 노후 대책 그리고 산업 재해 보험에 대한 권리이다. … 이러한 권리들 가운데서 노동자의 신체적인 건강이나 정신적인 건강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 노동환경과 작업 환경에 대한 권리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노동하는 인간』, 19항).</p> <p>“기업 안에서 합법적인 이윤 추구는 같은 회사 안의 여러 지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존엄을 보호하여야 할 포기할 수 없는 의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간추린 사회 교리』, 344항).</p>
---

21. 우리나라는 일터에서 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한 해 900여 명이 넘고, 질병 사망까지 포함하면 2,000여 명이 넘는 산재 사망 다발 국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법 제도 개선의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는 매년 반복되고 줄지 않는 실정입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와 산업재해 근절 정책에 대한 구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후보명	산업재해 사전 예방조치와 근절 정책에 대한 구상은
이재명	① 있다.
윤석열	① 있다.

심상정	① 있다.
-----	-------

21-1. 있으시다면, 이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공약은 무엇입니까?

후보명	
이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진적 산재사망 'Zero'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해 사업장 단위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li> <li>-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강화 및 안전보건교육 확대</li> <li>- 산재사망 다발 사업장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 할증제도 강화</li> </ul> </li> <li>○ 산업재해 예방 지원 대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재예방 예산 2조원으로 확대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폭 지원</li> <li>- 직업·건강위험요인별 맞춤형 건강진단(비) 지원</li> <li>-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영세사업장 노동자 건강관리를 전담 지원하는 '산업안전보건 주치의'제도 도입</li> <li>- 야간노동 과로사 방지 및 감정노동 등 정신건강 장애 예방 방안 마련</li> </ul> </li> <li>○ 산업안전보건 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 공시제'단계적 도입</li> <li>- 신재생·수소 에너지 등 관련 새로운 안전보건기준 마련</li> <li>- 도급 위험작업시 2인1조 이상 작업 등 예방조치 강화</li> </ul> </li> <li>○ 산업안전보건 노동자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염, 혹한 시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권 도입</li> <li>- 일정 규모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특별감독 참여 의무화</li> </ul> </li> </ul>
윤석열	<p>소규모사업장, 건설현장 등 산재 취약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기술 및 예산을 집중지원하고, 대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하청업체의 안전수준을 높이는 대·중소기업 상생형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산재 예방에는 노사의 공동노력과 안전문화의 정착이 필수적입니다.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노사의 공동 노력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건설팅기관의 산재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및 컨설팅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p>
심상정	<p>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예고되어 있었던 올해 1월에만 38명, 하루에 1.6명꼴로 산업재해 때문에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끼임(34%), 추락(23%) 등 후진국형 사고의 비율이 높습니다. G8 국가, 선진국이라는 자량이 부끄럽습니</p>

다.

2021년 1월 26일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애초 발의되었던 여러 제정안에 비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수위가 낮아지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 및 징벌적 손해배상의 하한이 정해지지 않아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물붕괴사고의 경우나 같은 해 10월 6일 여수시 응천동 요트선착장에서 발생한 홍정은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는 동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대재해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하한을 도입하고, 인과관계 추정 규정, 양형 절차 특례규정 및 공무원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지난 1월 위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다치거나 아플 경우 소득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소득 70%)을 도입하겠습니다. 현행 산재보험제도를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든 먼저 산재치료 및 요양을 받는 <신청-승인>제도에서 <선보장>제도로 전환하는 '원스톱 산재보험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발주·설계·시공·감리자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과 산재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생명안전 분야의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런 생명안전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사용되거나 외주화, 하청 등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생명안전 분야 일자리 직접고용 원칙 적용, △위험작업 2인 1조 업무 적용, △생명안전분야 적정인력 기준 규정 및 현실화, △중소사업장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공공성 생명안전 일자리 창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업종, △규모 무관하게 전면 적용, △30인 혹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공동안전보건관리자 선임 허용해야 합니다.

	<p>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현장의 업무에 대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각종 산업공정 등에 대한 노동자 당사자 및 시민의 알권리와 참여권 역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노동자 시민의 알 권리 보장하고 노동자,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작업 중지권 보장하겠습니다.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p>
--	--

21-2.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전담기구로 제안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기타\_\_\_\_\_

후보명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하여
이재명	① 찬성한다.
윤석열	③ 기타
심상정	① 찬성한다.

21-3. 선택한 응답에 대한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명	
이재명	<p>‘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과 보상, 재활, 복귀를 총괄하는 전문·독립 기관인 ‘노동안정보건청’ 설립하겠습니다.</p>
윤석열	<p>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련기관 및 이해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최선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행정체계로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도 대안으로 모색하되 우선은 산업안전보건본부체계로 승격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조직 격상에 앞서 본부체계의 운영 성과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토대로 사회적 공론화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의 최선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p>
심상정	<p>OECD 최악의 산재는 최악의 산업안전보건행정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의 단순히 흩어져 있는 행정 기능을 산업안전보건청에 모으는 게 다가 아닙니다. 행정자원을 강력히 동원하고 행정시스템을 철저히 혁신하겠다는 다짐 속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p>

구의역 김군 산재사망, 태안화력 故 김용균 씨 사망, 이천 화재 사망 사고 등 연속적 산업재해 때문에, 국회에서도 산업재해 근절을 위하여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 2021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통과시키는 등 입법 노력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안전보건 행정은 고용노동부 1개 부의 1개 국(局)이 도맡고 있어, 잇따라 개정된 법의 취지를 따르고 있지 못한 형편입니다.

산업안전보건 행정은 고용노동행정 중에서도 공공성, 전문성, 독립성, 효율성이 높게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전문적 인력과 독립적인 행정을 위한 자원 배분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영국의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등 선진국은 각각 노동부의 외청 조직으로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행정기구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전문화, 특수화, 효율화를 위해, 산업안전과 노동자 보건 기준 수립, 산업재해 조사·감독·지도, 산재 예방을 위한 행정·통계작성·기술 연구 및 지원, 재해 보상·재활 등 산재보험업무를 총괄해야 합니다. 재해 예방은 물론 보상을 산안청의 업무에 포괄해, 산업 안전보건 행정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높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산재 예방과 보상행정을 통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예방 및 감독 행정을 전문화·고도화하고, 산업재해 보상을 재해예방업무와 함께 수행하여 효율적인 재해 예방과 재해통계 정보축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여 산업안전과 노동자 보건 행정을 전문화하고 자율성을 확보하며, 재활과 보상,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사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여건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노동조합의 활동 보장과 기업의 과도한 노조 손배가압류 제한]

“노동자들이 참으로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경제 생활의 올바른 질서 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를 자유로이 결성할 권리, 또한 보복의 위험 없이 단체 활동에 자유로이 참여할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사목헌장 68항).

“노동자들은 파업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따라서 파업에 참여했다고 하여 어떠한 개인적

처벌이나 규제를 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노동하는 인간」, 20항).

22. 2020년 11월 국내에서 사업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총 23개 사업장 58건, 총 658억 원, 가압류 금액도 18억 원에 달하며, 피해 사업장 수는 이전 정권보다 많습니다. 이렇듯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는 여전히 많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5호 ‘노동쟁의’, 동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동법 제4조[정당행위] 조항을 개정하여 손배 가압류의 두려움 없이 노동자의 파업권 및 단체행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기타\_\_\_\_\_

후보명	손배 가압류의 두려움 없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 방안에 대하여
이재명	① 찬성한다.
윤석열	③ 기타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조정 검토)
심상정	① 찬성한다.

22-1. 찬성하신다면, 이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공약은 무엇입니까?

후보명	
이재명	‘노동쟁의’범위 확대 및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제한하겠습니다.
윤석열	<p>현행 노동조합법 제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p> <p>즉, 적법하게 행해지는 교섭과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모두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쟁의행위입니다. 사람을 감금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생산시설을 점거해서 정상조업을 방해하거나 기물을 손상시키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당연히 그 행위에 대하여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노동조합도 이와 같은 기본적인 법치질서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판례, 학계, 그리고 선진국도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p>

	<p>질문의 취지가 적법한 쟁의행위든 불법적 쟁의행위든 묻지 않고 모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하자는 것이라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는 그에 응분한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p> <p>그렇지 않고 쟁의행위의 적법성 판단을 확대하자는 것이라면 이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핵심협약)을 비준하였으므로 사법부도 국제기준에 맞게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당한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재단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p> <p>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의 상호신뢰와 협력의지가 중요합니다. 미래를 위한 노사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사가 신청하면 노동위원회가 손해배상의 조정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강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사가 조정에 대한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당연히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입니다.</p>
<p>심상정</p>	<p>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노조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우선 손배·가압류를 제한하겠습니다. 또한, 노조 활동 보장을 위해 먼저 ILO 기준에 맞게 고용관계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workers)의 결사의 자유(노동3권) 보장하겠습니다.</p> <p>노조법 제2조 제1호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행정관청의 근로자성 심사를 이유로 한 노조설립방해 금지하기 위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삭제하겠습니다.</p> <p>하청, 간접고용노동자의 결사 자유, 교섭권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제2조 제2호 사용자 정의규정 개정하겠습니다.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 자격을 재직자(종사자) 조합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ILO 기준에 어긋납니다. 노조법 제17조 제3항, 제23조 제1항 단서 삭제하여 기업별 노조의 임원 자격도 노조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p> <p>ILO 기준에 맞게 결사의 자유, 노조설립의 자유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제12조 제3항 삭제하겠습니다.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반려규정을 삭제하여 노동자의 결사 자유를 보장하고,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증 교부 지연 등 부당한 개입요소 차단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정한 규약, 결의처분,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됩니다. 노조법 제21조, 제31조 제3항 및 제93조 제2호 중 벌칙 규정을 삭제하겠습니다. ILO 기준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전임자 급여를 정하도록 하</p>

<p>고, 정부 개입 요소를 차단하겠습니다.</p> <p>노조법 제24조 제2항(근로시간면제 한도), 제4항(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 무효), 제81조 제4호 중 해당 부분 삭제하고, 노조법 제24조의2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삭제하겠습니다. ILO 기준에 맞게 교섭 대상 확대, 산별교섭 촉진하겠습니다. 노조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개정, 산별·지역별 교섭 및 협약체결권 명시, 교섭대표노조 관련 규정 삭제하겠습니다.</p> <p>ILO 기준에 맞게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소수노조 교섭권 보장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산별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 촉진,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노사가 정하되 원래 상한인 2년으로 개정하겠습니다. 공익사업장의 쟁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 최소유지업무 신설, 필수공익사업에서 대체근로 허용규제 삭제, 긴급조정 대상 합리적 축소와 긴급조정 결렬 시 직권 중재회부 조항을 삭제하겠습니다.</p> <p>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 노조법 제4조, 교원 노조법 제3조의 정치활동금지 규정을 삭제하겠습니다.</p> <p>정의당은 일터에서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국제기준이 통용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내 법제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p>
---

[일하며 쉴 권리 - 상병수당 도입]

<p>“노동은 가정을 세울 수 있게 하는 조건이 될 정도로 필수적이다. 가정을 유지하는 수단은 노동을 통하여 얻어지기 때문이다. 노동은 또한 개인의 발전 과정에 필요하다. 실업의 고통을 겪는 가정은 그 뜻하는 바를 온전히 성취하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간추린 사회 교리』, 249항).</p> <p>“기업과 전문가 단체, 노동조합과 국가는 고용의 관점에서 가정을 곤경에 빠뜨리기보다는 지원하는 정책들을 증진하여야 한다. 실제로, 가정생활과 노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영향을 미친다. 먼 직장까지의 출퇴근, 부업, 몸과 마음의 피로는 모두 가정에 쏟을 시간을 빼앗아 간다”(『간추린 사회 교리』, 294항).</p> <p>“가정과 노동의 이러한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한 가지 요소는 가족 임금으로서, 이는 가정을 유지하고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임금이어야 한다. (...) 가족 임금을 구체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이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중요한 사회 규정들이 이를 구체화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주요 사회 보장이 도움이 될 수 있다”</p>
---

(『간추린 사회 교리』, 250항).

“이러한 보조금은 자신의 생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위치에 있지 않는 동안은 실질적인 필요, 즉 부양 가족의 수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노동하는 인간』, 19항).

“노동자의 권리는 다른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과 탁월한 인간 존엄에 바탕을 둔다. … 그것은 휴식의 권리, … 실직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생계에 필요한 적절한 보조금에 대한 권리, 연금에 대한 권리와 노후, 질병, 직업 관련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대한 권리 … 등이 있다”(『간추린 사회 교리』, 301항).

23. 소득의 상실로 생활이 막막해질까 걱정되어 아파도 일을 할 수 없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보호를 위한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기타 \_\_\_\_\_

후보명	상병수당 제도에 대하여
이재명	① 찬성한다.
윤석열	① 찬성한다.
심상정	① 찬성한다.

23-1. 찬성하신다면, 이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공약은 무엇입니까?

후보명	
이재명	이재명 후보는 ‘상병수당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할 수 있고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의 시범사업과 단계적 도입하겠습니다.
윤석열	아플 때 할 수 있도록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을 추진할 것입니다. 임금근로자의 약 46%(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종사자, 대기업 종사자 등)를 제외한 국민들은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유급 상병휴가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저소득 계층은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상병수당 제도는 현재 세계 163개국, OECD 36개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p>대다수 국가에서 보장되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입니다.</p> <p>상병의 개념에 모든 질환을 포괄하고 입원, 외래, 재택 치료 모두 포함하여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형태의 치료라도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p> <p>또한 신속한 치료 후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치료 기간에 적절한 소득지원을 하겠습니다.</p> <p>아플 때 쉴 수 있도록 한국형 상병수당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p>
심상정	<p>○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보편 적용</li> <li>- 질병, 손상으로 인해 경제활동 불가능할 시 소득의 70% 보상</li> </ul>

[노동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간 격차]

<p>국가의 법과 제도는 “임신에서부터 자연사에 이르는 생명의 권리를 결코 훼손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것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한다(『간추린 사회 교리』, 231항 참조).</p> <p>“노동은 가정을 세울 수 있게 하는 조건이 될 정도로 필수적이다. 가정을 유지하는 수단은 노동을 통하여 얻어지기 때문이다. 노동은 또한 개인의 발전 과정에 필요하다. 실업의 고충을 겪는 가정은 그 뜻하는 바를 온전히 성취하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간추린 사회 교리』, 249항).</p> <p>“고통 속에서 남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노인들한테는 의료 서비스와 적절한 지원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다”(『간추린 사회 교리』, 222항).</p> <p>“노동자의 권리는 다른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과 탁월한 인간 존엄에 바탕을 둔다. (...) 실직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생계에 필요한 적절한 보조금에 대한 권리, 연금에 대한 권리와 노후, 질병, 직업 관련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대한 권리 … 등이 있다”(『간추린 사회 교리』, 301항).</p> <p>“임금 외에도,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보장이 여기서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 사회 보장의 셋째 분야는 연금의 권리와 노후 대책 그리고 산업 재해 보험에 대한 권리이다”(『노동하는 인간』, 19항).</p>
--

24. 현재 법적인 정년 연령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입니다. 정년에서 국민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기간은 수입이 없는 기간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간 격차를 해소할 대책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후보명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은
이재명	① 있다.
윤석열	① 있다.
심상정	① 있다.

24-1. 대책이 있으시다면, 이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공약은 무엇입니까?

후보명	
이재명	<p>생산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더 일할 수 있는 기회확대 및 어르신들의 소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연금수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속 고용 정책을 통해 소득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것입니다. 60세 이상 실질 고용연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등 다양한 유도정책 시행하겠습니다. 세대 간, 노사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합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p> <p>※ 정년연령의 인상, 계속고용제도의 도입(근무연장제도, 재고용제도), 정년제 폐지 등 다양한 방식에 대해 논의 가능</p>
윤석열	<p>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이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법정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법정정년 연장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이 고임금에 고용이 안정된 약 20% 남짓의 공공부문과 대기업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신규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는 만큼 청년고용상황과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연계하여 검토할 것입니다.</p> <p>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유연화하여 중장년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하여 우선 60세 정년제도부터 실제 기업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유도하고, 고용보험사업을 통해 기업의 고용연장을 유도하고 지원할 것입니다.</p> <p>실질적인 고용연장과 정년연장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70세까지 정년연장, 정년퇴직 후 재고용, 협력업체 재취업, 사회적 경제영역으로의 취업 지원과 같은 중장</p>

	<p>년 고용연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 의무 부과와 동시에 채용장려금과 고용유지장려금 확대 등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p> <p>정년과 연금간의 경제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장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기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장년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중장년 도약보장 패키지'와 개인별 상황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한 '일자리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조기퇴직한 중장년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p> <p>민관협력으로 운영되는 지역별·업종별 '평생현역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기술·경험 공유 활성화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로 개선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p>
심상정	○ 60대 일자리정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연령 상향

## 생태환경위원회 질의

### [농업 - 식량자급]

25. 현재 우리나라는 주로 수입 농산물로 국민의 먹을거리가 채워지고 기후변화와 국제 곡물 시장의 영향 등으로 언제라도 식량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예상되는 식량문제와 식량안보(식량 주권)를 위해 쌀, 보리, 밀, 감자 등의 주요 식량 작물의 국가 수매를 늘리고,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으로 정해 식량 자급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명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를 통한 식량 자급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하여
이재명	<p>동의합니다. 이를 위한 공약으로 아래와 같은 것을 준비하였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량자급률 목표 60% 달성 추진</li> <li>△주요 품목 자급률 목표설정 및 확대</li> <li>△식량안보직불제 도입</li> <li>△목표달성을 위한 농지확보, 무분별한 농지전용 방지</li> <li>△먹거리기본법 제정</li> </ul>
윤석열	식량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병목

	<p>현상, 이상기후로 인한 식량 위기와 우크라이나사태 등 정치적 불안정 등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식량문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p> <p>다만, 기초농산물 국가수매 방식만이 식량안보의 유일한 해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거와 같은 추곡수매제 방식으로 기초농산물을 국가가 수매할 경우, 우리나라의 감축대상보조금 한도인 1조4,900억원을 초과하여 WTO협정의 국내보조금 감축의무를 위반할 것입니다. 더욱이 과거 추곡수매제처럼 수매가격 결정에 두고 정부와 농민 단체, 정치권 사이에 갈등 심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수매가격에 따른 과잉생산 유발, 정부 재고의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 등의 문제도 우려됩니다.</p> <p>우리나라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식량용 쌀과 맥류 자급률, 모든 곡물의 자급률,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및 우유 자급률을 설정하고, 5년마다 자급률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식료·농업·농촌 기본법」에 식료자급률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식량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 설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p> <p>윤석열 후보는 농업직불금을 5조원으로 확대하고, 식량안보직불을 신설하여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보장할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한 후, 품목별 식량자급률 목표치, 농지 확보계획과 장기식량수급계획을 함께 수립할 것입니다. 식량자급률 달성을 위한 예산편성도 의무화할 것입니다. 또한 기초식량의 공공비축량을 2개월 치에서 3개월 치로 늘리고, 정부 식량비축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식량위기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입니다.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관리기관과 농지정보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할 것입니다.</p>
<p>심상정</p>	<p>다음과 같이 공약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도별 자급률 상향조정으로 곡물자급률 30% 달성하여 식량주권 수호</li> <li>○ 식량자급률 목표 법제화</li> <li>○ 안정적인 식량수급을 위한 품목별 공공수매비축 확대</li> </ul>

[농업 - 식량자급]

26.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17년 기준 약 23%(사료용 포함)입니다. 쌀은 국민의 주식

이고 식량 자급의 핵심 작물입니다. 2021년도 9월 말 현재 쌀 재고량은 15만 4천 톤으로 쌀값 하락이 예상됩니다. 식량을 자급하고 쌀값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밥쌀 수입 중단, 정부 구매제 부활, 대북 쌀 교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명	식량 자급과 쌀값 보장 방안에 대하여
이재명	<p>밥쌀수입 중단 제안에 대해서는 중단하기 어렵습니다. UR협상결과에 따라 쌀 약 41만톤을 의무수입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를 밥쌀용으로 수입하기로 한 국제약속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합니다.</p> <p>쌀 정부 구매제 제안에 대해서는 정부구매제는 WTO 제재 항목으로 분쟁의 소지가 큼니다.</p> <p>수출액 기준 세계 6위 국가로서 국제 약속을 지켜야 하므로 불가피합니다.</p> <p>대북 쌀 교류는 찬성입니다. 다만,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 추진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p>
윤석열	<p>2021년 9월 쌀 재고량 15만 4천 톤은 2021년 잠정 수요량(식량·가공용) 358만 1천 톤의 4.3% 수준입니다. 이는 2021년 식량용 수요량 288만 7천 톤의 5.3% 수준으로 FAO가 권고한 재고량 기준인 17~18%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쌀 부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p> <p>다. 다행히도 2021년 쌀 생산이 전년보다 약 10% 늘어난 388만 2천 톤이 생산되면서 2022년 재고는 FAO 권고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공급과잉의 영향이 큼니다. 따라서 초과공급량 30만 톤을 양곡관리법에 따라 즉각 시장에서 격리해서 쌀값을 안정시켜야 할 것입니다.</p> <p>저울관세할당물량(TRQ)으로 들어오는 연간 40만 9천 톤의 수입쌀은 우리나라 쌀 수급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국제가격보다 쌀 가격이 4배가 높은 우리나라 쌀 시장을 지키기 위한 WTO협상의 결과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약속을 깨고 쌀 수입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쌀의 시장 유통을 최소화하고 가공용으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 구매제 부활은 앞의 25번 질문에 답한 내용으로 같음하겠습니다. 대북 쌀 교류는 유엔안보리 제재와 북한이 핵포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p>
심상정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농업 - GMO 퇴출]

27.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식용 GMO 수입국이고 국민 1인당 연간 GMO 소비량은 45kg입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GMO 표시를 해달라는 유전자조작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와, 학교 급식에서 GMO식품을 퇴출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명	GMO식품에 대하여
이재명	찬성합니다. 아래와 같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 △어린이집·군대·복지시설 급식에 공공체계를 확대하여 친환경 로컬푸드 공급 증대
윤석열	식품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해 GMO 완전표시제는 당연히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과 군급식에 국산 친환경 농산물이 사용되도록 하고, GMO식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농식품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GMO 완전표시제를 실현하여 국민의 먹거리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심상정	다음과 같이 공약함 ○ 유전자변형(GMO) 농식품 원료 사용표시 의무화 ○ Non-GMO 식재료의 학교 및 공공급식 사용 적극 추진으로 식탁안전 실현

[농업 - 친환경 유기농업 전환, 토종 종자 보존]

28.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로 농업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고투입 화학 농업으로 농촌지역 환경 훼손이 심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한국 농업을 위해 땅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저투입 친환경농업이 중요한 대안입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친환경농업 육성보다 GAP(우수농산물 - 제초제, GMO 허용) 재배 면적을 2025년까지 50%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의 농정 방향을 고투입 화학 농업에서 저투입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건강한 우리나라 토종 종자의 보존과 이용을 확대하는 것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명	친환경 유기농업 전환, 토종 종자 보존에 대하여
이재명	찬성합니다.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공약이 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재배면적 비중 20%로 확대(화학비료와 농약 사용 감축, 탄

	<p>소저감형 친환경 농업 생산단지 조성)</p> <p>△저탄소 축산시스템으로 전환(경종축산 순환농업 및 동물복지 생태 축산 활성화, 가축분뇨에너지화 확대 및 공공관리체계 구축, 저메탄 저단백질 사료 보급 확대 등)</p> <p>△국내 부존 동식물 자원을 활용하여 IT, BT, NT와 융복합 연구 및 마이크로 바이옴, 대체식품·메디푸드 등을 세계 수준으로 육성</p> <p>△디지털 육종기술 등 첨단기술 활용 종자산업 발전기반 및 종자생명산업 클러스터 구축 추진</p>
<p>윤석열</p>	<p>온실가스 저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친환경농업·생태농업·저탄소농업으로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다만, 친환경·저탄소 농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농법에 익숙했던 농가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령화되고 인력이 부족한 농촌에서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p> <p>윤석열 후보는 현재 유기농업직불금의 단가 인상 등을 통해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급식, 군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의 사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친환경 농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p> <p>우리나라 토종 종자의 보존과 이용을 확대하는 것은 종자 주권 확보와 식량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종 종자 보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토종 종자를 심는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농협, 소비자협동조합, 식품기업과 유통업체 등과 협력하여 토종 종자로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p>
<p>심상정</p>	<p>아래와 같이 공약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업의 생태적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를 넘어선 지속가능한 농어업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농어업비중 30% 확대, 농약·화학비료 50% 감축</li> <li>- 논농사부터 친환경 농업으로 우선 전환</li> <li>- 경축순환농업 확대 및 축산 적정사육두수관리제 도입</li> <li>- 그린바이오(농축산용미생물) 산업 활성화로 생태적 전환 지원</li> </ul> </li> <li>○ 토종종자 보호육성으로 종자주권을 강화하고 생물종다양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종농산물의 공공수매지원</li> <li>- 토종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보관과 함께 유전자원등록을 통한 종다양성</li> </ul> </li> </ul>

	확보
--	----

[농민기본소득]

29. 농민들은 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태 위기에 놓여 있는 지구의 생태적 지킴이들입니다. 먹거리 생산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생명 지킴이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초고령화되어 있고 젊은 인구가 유입되지 않아 농촌이 고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라 여겨지는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명	농민기본소득에 대하여
이재명	<p>당연히 찬성합니다. 한발 더 나가 소멸해 가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하였습니다.</p> <p>△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농어촌지역 이장수당, 통장수당 인상 △은퇴농연금 지급 추진</p>
윤석열	<p>농민기본소득 또는 농촌기본소득을 통해 농촌소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농촌소멸을 막기 위해서 농축산업은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와 함께 주택,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과 농촌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은 성공한 사례가 없는 정책으로 세금만 낭비하고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민들이 낸 세금이 농촌주민에게 이전되면서 ‘열심히 일하는 도시민’ 대 ‘무임승차하는 농민 또는 농촌주민’이라는 갈등 프레임을 조장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p> <p>윤석열 후보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농촌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등으로 분산·지원하기보다 공익직불제로 일원화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잘 사는 농민이나 어려운 중소농이나 동일하게 현금을 지원하는 상후하박식 농민기본소득 지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농업직불금을 5조 원으로 늘려서 우리 농업의 중심인 중소가족농과 고령농에게 두툼하고 촘촘하게 지원하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p>
심상정	아래와 같이 공약함

○ 농어민기본소득 월 30만원 지급
---------------------

[4대강 재자연화]

30.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금강, 영산강에 설치된 보의 일부 수문이 개방되었습니다. 긴 기간 수문을 개방한 금강은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진 멸종위기종 흰수마자 확인되는 등 재자연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와 콘크리트 고정보가 설치된 곳은 고인 물이 다시 썩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녹조 문제가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4대강 생태계와 국민 건강을 위해, 궁극적으로 보와 댐을 철거하여 4대강 재자연화를 이루는 것이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명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하여
이재명	<p>이명박 정권이 수십조 원을 낭비해 4대강을 훼손한 후 수질오염, 수생태계 파괴, 유해 남조류 등 독성물질 문제까지 심각한 상황입니다. 반면, 자연성 회복을 위한 금강, 영산강 보 수문개방 이후 녹조가 줄고 물이 맑아지고 금빛 모래사장이 돌아와 희귀어류와 새들이 되돌아오고 있습니다.</p> <p>깨끗한 물은 생명의 원천이며 인류 활동의 시작점입니다. 다시 강이 자연 그대로 흐를 수 있도록, 못 생명들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4대강 재자연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p>
윤석열	<p>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보의 개방 또는 철거를 통한 재자연화 여부는 기후위기 시대에 수자원 확보 및 활용 측면, 수질 및 생태계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농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충분한 논의를 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p>
심상정	<p>아래와 같이 공약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만금 해수유통과 하구둑 개방 또는 철거를 위한 연구 수행 및 복원계획 수립</li> <li>○ 4대강 보 처리방안 이행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확대</li> <li>○ 용도 없이 방치된 농업용 보 3,000개 철거</li> </ul>

31. 금강과 영산강에 이은 한강과 낙동강 보 처리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영주댐 해체에 관해 어떤 의견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후보명	한강과 낙동강 보 처리방안과 영주댐 해체에 대하여
이재명	<p>금강, 영산강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한강, 낙동강 보 처리 방안 수립을 위해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가속화하고 강과 유역이 모두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취양수장 개선을 서둘러 보상 시개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p> <p>영주댐의 경우도 담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댐의 효용성과 존폐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p>
윤석열	<p>보와 댐 건설이 상대적으로 수량 확보와 물의 이용에 방점을 둔 것이었다면, 재자연화는 수질과 생태계에 방점을 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보 건설과 개방 모두 적절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p> <p>따라서 수량과 수질을 균형 있게 함께 고려하여 보 또는 댐에 처리방안을 결정하되, 지역농민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대화하고, 보 또는 댐의 처리로 물 환경에 변화가 오는 경우에 발생할 피해방지 등 갈등관리대책을 마련한 후에 추진 할 것입니다.</p> <p>4대강사업 조사·평가단에서 충분한 사전준비를 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수·치수, 수질·수생태계, 지역주민 이해관계,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할 것입니다.</p>
심상정	4대강의 보와 농업용 보 등 4대강 재자연화 추진

32. 4대강 재자연화를 임기 내에 실현하기 위한 어떤 원칙과 구체적인 방향은 무엇이며, 4대강 생태계 회복을 위한 지속 가능한 국가 및 유역 물관리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후보명	
이재명	<p>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유역 및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함께 보 처리방안 이행계획과 자연성 회복, 지역상생을 위한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 추진하겠습니다.</p> <p>강 유역의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통해 보 개방에 문제가 없도록 취양수장</p>

	<p>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p> <p>또한 4대강 유입 산단폐수 등 오염원에 대해 상수원 수준의 관리 강화로 분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p> <p>소하천을 비롯해 우리 강 전역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발원지부터 하구까지 통합관리를 실현하겠습니다. 유역단위 통합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능을 상실한 전국 곳곳의 보들을 정비하는 등 깨끗한 강이 멈춤 없이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윤석열	<p>수량과 수질을 균형 있게 함께 고려하여 보 또는 댐에 처리방안을 결정하되, 지역농민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대화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결정하고 실행할 것입니다.</p>
심상정	<p>아래와 같이 공약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구역복원특별법」 제정</li> <li>○ 강변 완충숲 조성을 통한 탄소 저장 및 수질 개선</li> <li>○ 자연기반해법의 유역 복원 및 지역활성화에 수계기금 활용</li> </ul>

[탈핵 - 핵발전소 폐기]

33. 독일은 2022년 완전 탈핵을 선언했습니다. 후보께서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핵발전소를 폐기하는 데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후보명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핵발전소 폐기에 대하여
이재명	<p>2030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기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반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원전 정책은 신규원전 건설하지 않고, 가동 중인 원전은 사용기한 내에 안전하게 사용하며, 안전을 위해 수명 만료된 원전은 폐쇄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 감소에 대비한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2030년경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원전발전단가보다 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에너지전환지원법 등 에너지전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원전을 보다 안전하게 폐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p>

윤석열	② 반대한다.
심상정	탈핵은 찬성하는 입장이나 시점이 다름. 아래와 같이 공약함 ○ 「탈핵기본법」 제정을 통해 설계수명 만료 핵발전소 폐쇄, 신규 핵발전소 금지를 통해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탈핵

[탈핵 법제화]

34.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했으나, 법 제도적 준비를 하지 않고, 핵발전소 수출정책과 소형모듈원전(SMR) 연구사업 등 ‘탈원전’과 모순된 정책을 추진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에 혼선을 초래하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발전은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차기 정부는 헌법적 가치에 따라 탈핵을 법제화하고 ‘안전한 탈핵’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 탈핵 기본법 ○ 원자력진흥법 폐지와 원자력진흥위원회 해소 ○ 신규 (SMR 포함) 및 수명연장 금지 법제화 ○ 핵발전소 수출 및 핵폐기물 반출 금지(자국내 처분 명시) 법제화 ○ 재처리 및 관련 연구와 예산 배정 금지 등을 담은 탈핵 법제화에 대한 의지가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후보명	탈핵 법제화의 의지에 대하여
이재명	법제화의 의지는 있으나 구체적 방향에서는 다를 수 있으며, 입법부의 고유 권한인 법 제정의 세부적 내용까지 대통령 후보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에너지 전환과 감(減)원전 정책에 따른 변화를 고려한 현행 법제도 개선과 추가적인 제정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열	② 없다.
심상정	① 있다. 아래와 같이 공약함 ○ 「탈핵기본법」 제정을 통해 설계수명 만료 핵발전소 폐쇄, 신규 핵발전소 금지를 통해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탈핵 ○ 「원자력진흥법」 폐지, 신한울 3·4호기 건설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원자력규제위원회로 격상, 상임 위원제도 신설 및 역할 강화</li> <li>○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재활용을 금지하고 직접 처분 법제화</li> <li>○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실험과 고속로 개발 중단</li> </ul>
--

**[위험·부실 핵발전소 조기 폐로와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방안 수립]**

35. 모든 핵발전소가 불안·위험하지만, 그중에서도 특별히 안전성 및 사회적 논란이 많은 핵발전소의 경우 설계수명까지 무조건 운영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사고 발생 이전에 선제적 조치를 통해 조기에 폐로토록 해야 합니다. 격납건물의 구멍과 철판 부식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낳은 한빛 3~4호기와 삼중수소 누출 등의 문제를 일으킨 월성 2~4호기, 대도심에 위치하며 잦은 사고가 일어난 대전 하나로 원자로의 조기 폐로에 대한 입장과 쌓여만 가는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하고 올바른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산업부에서 분리된 독립적인 핵폐기물 전담 기구 설치와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후보명	핵폐기물 전담 기구 설치와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이재명	<p>원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인 만큼 원전의 운용 실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추진하고, 특히 극히 위험한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저장 및 처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추진체계와 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p> <p>아울러 고준위핵폐기물의 처분은 지역주민의 수용성 없이 그리고 국민적 합의 없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를 신설해 기존 기본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전체 로드맵을 수립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처분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p>
윤석열	<p>사용후핵연료는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 확보 전까지 원전 부지 내에 안전하게 관리하되,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업자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실태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p> <p>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장기간에 걸쳐 국민적 논의를 거치야 하는 사안이므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문제 해결 과정을 꾸준히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법” 입법을 추진하여, 이 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꾸준히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법에는 ① 사용후핵</p>

	연료를 안전하게 관리, 저장 및 처분하고 처분 부담을 줄이는데 필요한 기술 개발 지원, ② 중간저장 및 영구 처분시설 부지 확보를 위한 투명한 절차, ③ 지역사회 및 국민과의 소통방안, ④ 중간저장 및 영구처분시설이 들어설 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아래와 같이 공약함 ○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저장에 대한 연구개발 및 정보 공개 지원 ○ 지자체간 경쟁방식, 지원금 중심의 처분장 부지 선정 정책을 지양하고, 지역간 형평성·환경정의에 부합하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원칙 법제화 ○ 기존 핵발전소 지역에 중간저장시설 건설 금지, 중간저장시설 현안에 대한 공론화 추진 ○ 지역주민 등 이해 당사자들이 포함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 및 공론화 진행

[핵발전과 오염수 배출 문제]

36. 핵발전이 가동되면 어디서나 오염수가 배출되는데, 특히 중수로의 경우는 오염수 배출량이 더 많고, 그동안의 배출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방출하고 있는 핵발전소의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과 중국의 핵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서해의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후보명	핵발전소의 오염수 문제에 대하여
이재명	핵발전소의 오염수 문제는 주변 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감시시스템을 보다 확충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도 확대하여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에 대하여 태평양 연안의 인접국과 지방정부들에 일본의 무책임한 조치에 대한 공동 대응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제기구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 국가와의 지속적인 공동대응으로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우리나라는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원자력시설에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대한 배출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모든 원자력발전소가

	<p>이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상시 감시하고 규제하여, 주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p> <p>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관련해서는 일본측이 오염수 정화 및 배출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나라 전문가를 포함해 국제감시단이 참여한 가운데 확인 및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중국 원전 배출물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과 바다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p>
심상정	<p>아래와 같이 공약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를 위한 실질적 활동 전개</li> <li>- 중국, 대만, 북한 등 태평양 인접국가와 함께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 및 주변국가 시민사회단체들과 공조</li> <li>- 오염수 방류시 주변국가에 대한 건강 및 생태계 영향 등 평가</li> <li>- 일본 농수산물 검역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일본 농수산물 전면 금지 및 구상권 청구</li> </ul>

**[탄소중립과 석탄발전소 폐쇄]**

37. 우리나라 정부는 2021년 10월 27일 ‘2050년 탄소중립’을 의결하였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내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고, 단일 배출원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석탄발전소 퇴출 연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추세로는 2040년경에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이 섭씨 1.5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구 온난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후보께서는 2035년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내 모든 석탄발전소 폐쇄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 ① 2035년까지 국내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에 찬성한다.
- ② 2035년까지 국내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에 반대한다.
- ③ 기타 (구체적인 내용: -----)

후보명	2035년까지 국내 모든 석탄발전소 폐쇄에 대하여
이재명	③ 기타 (구체적인 내용: 2040년까지 석탄발전 가동 중단 추진)
윤석열	③ 기타 (구체적인 내용: 폐쇄는 불가피. 폐쇄 시기는 중장기 전력수급 전망 및

	<p>대체수단 확보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고 봄)</p> <p>모든 석탄발전소의 조기폐쇄는 전력공급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우리 국민과 기업에 크나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발전소 폐쇄가 불가피하지만, 우리 국민과 기업,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중장기 전력수급 전망과 대체수단 확보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석탄발전소 폐쇄시기를 정할 계획입니다.</p>
심상정	③ 기타 (구체적인 내용: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

### [탄소중립과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38. 우리나라에는 현재 59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강원도 강릉과 삼척에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되는 중입니다. 후보께서는 강릉과 삼척의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 중단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 ① 건설 중단에 찬성한다.                      ② 건설 중단에 반대한다.

후보명	강릉과 삼척의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 중단에 대하여
이재명	① 건설 중단에 찬성한다. 다만, 신규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의 공론화를 통해 대안 마련을 하는 등 조기 대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을 통해 조기 전환 등에 따른 사업자 보상,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윤석열	② 건설 중단에 반대한다.
심상정	① 건설 중단에 찬성한다. ○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투자 금지, 석탄산업 전환, 보상금 상정을 위한 「탈석탄에너지전환법」 제정

### [탄소중립과 송전로 건설 문제]

39. 초고압송전선로는 자연생태환경과 경과지 마을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건설 중인 동해안-신가평 500KVDC 초고압송전선로는 신한울 1, 2호기, 삼척석탄화력, 강릉안인화력의 전력 송전을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신한울 1, 2호기

는 기존 선로에 연결되어 있으며, 삼척석탄화력과 강릉안인화력은 기존 선로로 송전하기 위하여 연결 송전탑과 변전소가 공사 중이라 추가 송전선로의 건설은 불필요합니다. 후보께서는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송전선로 건설을 백지화하시겠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후보명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백지화에 대하여
이재명	<p>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해서는 분산에너지체계로 전환해야하며, 이를 통해 앞으로 초고압 송전선로를 최소화하는 전력계통 운영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 기존 가동 중인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조사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p> <p>또한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송전선로는 전력계통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p>
윤석열	<p>② 아니요.</p> <p>“2030 NDC 40% 선언” 이후,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도 높아지고, 전기차 사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기화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 정부도 2050년 전력수요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p> <p>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력계통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도권으로의 송전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평가 없이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취소를 선불리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p> <p>추후 “2030 NDC 40% 선언”, “2050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장기적인 전력수급 전망 등을 토대로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취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자 합니다.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결정 시, 자연생태환경과 경과지 마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주민 피해를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을 지역주민과 적극 소통하고, 전문가 자문을 충분히 거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p>
심상정	<p>① 예.</p> <p>아래와 같이 공약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고압송전탑 건설 중단, 기존 대규모 발전소 폐쇄에 따른 송전선로 재편, 송전선로 건설 관련 법령 재편</li> </ul>

[탄소중립과 수도권 에너지 자립도]

40.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서울과 수도권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후보명	서울과 수도권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구체적인 방안은
이재명	<p>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전체 생산 전력의 30%를 넘게 소비하지만 자립도는 낮아 에너지 생산-소비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은 건물, 경기·인천은 주로 산업 영역에서 에너지 소비가 큰 만큼 사정에 맞게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합니다.</p> <p>상업 및 주거 건물은 옥상 및 벽면 태양광 같은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와 제로에너지건물(ZEB)을 대폭 확대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산업 영역은 산단 내 지붕형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하고 근거리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높이는 등 RE100 산단 구축을 통해 자급 전력 비중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p>
윤석열	<p>수도권의 전력자립도는 약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신규 전력부하를 감소시키면서 청정 전원(電源)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p> <p>수도권의 대규모 신규 전력부하 증가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2029년까지 13.5GW가 수도권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집중을 지방으로 분산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p> <p>또 수도권의 청정전원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건물을 에너지자립형(건물일체형 태양광 BIPV, Grid-interactive efficient buildings(GEBs) 등)으로 전환하고, 커뮤니티 차원에서 상호 전력유통이 가능하도록 자립형 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화 하는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도록, 수소연료전지, 수소암모니아 터빈같이 안전하면서도 깨끗한 무탄소 전원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p>
심상정	<p>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50%로 확대하고 전력자급률이 떨어지는 대도시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p>

[탄소중립과 신공항건설]

41.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방해가 되기에, 영국 같은 경우는 신공항건설을 백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많은 곳에서 신공항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귀하의 생각과 관련 정책은 무엇입니까?

후보명	신공항건설에 대하여
이재명	<p>각 공항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환경적 문제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공항이 건설되더라도 유럽처럼 탄소중립 공항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입니다.</p>
윤석열	<p>이미 개발이 확정된 사업은 개발에 따른 국민편익 증가와 환경훼손을 비교衡量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이를 특별한 사정없이 철회하는 것은 상당한 사회적 갈등비용을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건설을 하되, 탄소중립을 포함한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추진할 것입니다.</p> <p>국토가 넓지 않고 교통인프라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는 우리나라 여건상, 신공항은 지역주민의 항공 교통권, 해외로의 이동 및 교류와 물류를 원활히 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공항을 대체해야 하거나 항공수요의 포화가 예상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공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p> <p>더 중요한 것은 공항의 운영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항별 탄소중립 목표와 로드맵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p> <p>※ 참고자료: 우리나라 공항 현황</p> <p>현재 우리나라는 15개 공항에 민항기가 운영 중이며, 공항 규모 및 기능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추공항(1): 인천</li> <li>2. 거점공항(6): 김포, 청주, 김해, 대구, 무안, 제주 (대구경북 신, 가덕도, 새만금, 제주2)</li> <li>3. 일반공항(8): 원주, 양양, 울산, 포항, 사천, 광주, 여수, 군산 (울릉도, 흑산도) ( )내 공항은 추진 중인 공항</li> </ol>
심상정	<p>아래와 같이 공약함</p> <p>○ 가덕도, 제주 제2, 새만금, 서산 등 신공항 건설계획 백지화</p>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 기업 참여]

42. 기후위기를 막고자 하는 탄소중립은 이제 시대적 소명이 되었습니다. 기업들도 RE100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이 소명에 동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탄소국경세 등이 생겨나고 있는 국제적 상황 속에서,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기업 활동은 이제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원자력, 석탄, 천연가스에 의존한 에너지 생산과 비교해 재생에너지 생산은 너무나 미미한 상황입니다. 태양광 설비 확대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기업의 탄소중립 참여를 독려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후보명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 기업 참여 독려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이재명	<p>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일관된 에너지 정책 기조를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과감하고 대대적인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중 핵심 사업으로 국가 주도로 분산형·지능형 에너지 체계인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여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 공급,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p> <p>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전력망 접속보장, 우선구매제도, 재생에너지 구매가격의 안정성 보장 등 관련 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지원과 함께 원스톱샵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여 재생에너지 사업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p> <p>기업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대한 공정개선 등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고 관련한 기술 R&amp;D도 확대할 예정이며, 수소환원제철, 화이트바이오 기술, 저탄소 연료전환 등 신기술 적용을 통해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p> <p>또, RE100 참여기업 확대를 위해 세제·금융지원, RE100 공급단지 조성, 제품인증 등의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고, 그린 신산업 적극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위한 제도개선과 금융지원 강화, 투자세제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p>
윤석열	<p>RE100은 기후위기를 환기하고 재생에너지 이용을 촉진하는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기업이 RE100을 이행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계적 기업인 구글도 한때 RE100을 채택했었으나, 얼마 가지 못해 그 한계를 깨닫고 CF(Carbon-free) 100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기업에게 RE100과 같이 비현실적인 목표를 강요하면 그린워싱(Green Washing)을 조장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p>

	<p>라서 기업에 대해서는 탄소배출을 실질적으로 줄이면서도 기업경영에는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이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 수소 등의 무탄소 전원 이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p> <p>아울러, 탄소중립 대열에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과 규제 수단을 함께 활용할 것입니다. 지원수단으로, 탄소중립 이행 관련 연구개발 자금 지원, 조달기능을 활용한 친환경 제품 우선 구매 및 보조금 지급 등을 시행할 것입니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게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규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또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마련, 정부 내 컨트롤타워 지정, ESG 경영지표 개발, 정부-대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 인력 양성 등 전방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p> <p>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해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핵심이나, 원전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기간에 재생에너지만을 통한 탄소중립은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과 가격을 높이는 등 현실적 불확실성이 크며,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효율을 최대한 높인다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간헐적 불안전성을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EU도 원전을 그린에너지의 범주로 포함 시키는 등,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원전의 활용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대형원전을 마구잡이로 건설하겠다는 정책은 아닌 이념적 논리로 중단된 원전을 재개하는 형태로 추진할 예정이며,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와 함께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RE100,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는 상대적으로 탄소배출량이 높은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산업과 기업에 새로운 도전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응 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에 세제와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R&amp;D를 확대하며,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p>
<p>심상정</p>	<p>아래와 같이 공약함</p> <p>① 재생에너지 확대 공약</p> <p>○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50% 달성</p> <p>-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20GW이상 설치하여 180GW의 재생에너지 발</p>

	<p><b>전설비 확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전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li> <li>- 지역에너지전환 공사를 광역단위에 설치하여 운영 및 관리</li> <li>- 1가구 1태양광 시대를 열기 위해 공동주택 및 농어촌 마을에 태양광 무상 설치 및 배터리 지원</li> <li>- 절대농지 태양광 금지, 건물 옥상과 지붕·고속도로·철도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시설을 우선 설치</li> </ul> <p>② 기업 탄소중립 참여 독려 공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다배출 기업에 집중적인 과세가 될 수 있도록 ‘탄소세’ 부과</li> <li>○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 면세 혜택 등 단계적 철폐 및 에너지전환 방안 지원</li> <li>○ 고탄소 산업과 온실가스 유발 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지원제도 단계적 폐지</li> <li>○ 탄소배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는 금융정책 시행</li> <li>○ ESG 등이 그린워싱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 마련</li> <li>○ 녹색산업과 녹색금융 분류체계 및 산업별 탄소배출계수 재정비</li> </ul>
--	---

[탄소중립과 시민 참여]

43. 탄소중립은 국가, 기업, 국민 개개인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미 깨어 있는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활발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개인적으로 어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또한, 시민들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후보명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개인적인 실천과 시민 참여 독려 정책은
이재명	<p>개인적으로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1가지(비닐봉투)와 해야 할 1가지(장바구니)를 약속하는 ‘고고챌린지’에 동참한 바 있습니다. 텀블러 사용도 애쓰고 있고, 불필요한 이메일을 삭제하고, 재생지로 만든 수첩을 사용하는 등 탄소중립과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p> <p>또한 경기도에서 배달용기의 다회용기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하는 등 다양한 생활 속 탄소배출 저감 정책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일회용품 저감, 다회용기 사용 등 플라스틱 제로 정책, 소비자 수리권 보장으로 고쳐쓰고 아껴</p>

	<p>쓰기 등 시민들의 생활 속 탄소배출 저감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p> <p>특히 시민들이 에너지협동조합이나 펀드 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생산 제도를 확대하면 재생에너지 수용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p>
윤석열	<p>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기를 아껴 쓰고, 식습관을 개선하고, 녹색제품을 구매하며, 유권자로서 기후변화 정책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해 환경정의가 구현된 나라 만드는 일에 개개인이 능동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체험·토론중심의 환경 교육과정을 만들겠습니다.</p>
심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식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남기지 않기, 1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안 쓰는 전자제품 콘센트 뽑아놓기, 냉난방기 적게 쓰기 등을 실천하고 있음</li> <li>-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캠페인과 함께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li> <li>- 대중교통 활성화, 에너지 수요 관리, 1회용품 사용 억제, 탈플라스틱 로드맵 마련 등 정책을 공약함</li> </ul>

## 민족화해위원회 질의

### [평화 증진을 위한 평화와 화해 교육 실시]

“교회는 평화는 가능하다는 매우 단순하고 자명한 이치를 언제나 가르쳐 왔으며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평화는 하나의 의무임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자 교황 요한 23세께서 회칙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에서 말씀하셨듯이, 평화는 진리, 정의, 사랑, 자유라는 네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의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새 세대에게 이러한 이상들을 가르칠 의무를 지닙니다.”(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제37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 4항)

44. 분단 문제에 무감각할 수밖에 없는 세대가 증가하는 사회 환경에서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교육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학교 교육의 정규 과목 안에서 평화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적극적 동의 ②대체로 동의 ③대체로 반대 ④적극적 반대 ⑤잘 모르겠음

후보명	학교 교육의 정규 과목 안에서 평화교육의 적극적 실시 의향은
이재명	①적극적 동의(다만, 교육 과정의 개정은 교육 주체들의 논의가 제일 중요하므로 이를 강제할 수 없음)
윤석열	<p>①적극적 동의</p> <p>&lt;답변 이유&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는 남북한 간 화해와 협력,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임.</li> <li>○ 현재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학교 교육,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회교육기관에서도 통일교육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음. 통일교육에서는 헌법이 정한 바와 같이 남북 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봄.</li> <li>○ 평화와 통일, 화해에 대한 교육이 현실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는 전문가들과 학교 및 각 교육기관의 의견을 들어 더 좋은 방안을 검토할 것임.</li> </ul>
심상정	①적극적 동의

[평화 증진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다섯째 계명은 인간의 생명을 일부러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모든 전쟁이 초래하는 불행과 불의 때문에, 교회는 선하신 하느님께서 오랜 전쟁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도록 모든 이가 기도하고 행동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307항).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저의 진심 어린 인사를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 기념일이 일치, 대화, 형제간의 연대에 바탕을 둔 미래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희망을 모든 이에게 주길 바랍니다. 인내와 끈기 있는 노력을 통한 조화와 화합의 추구는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게 해줍니다”(프란치스코 교황,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 영

상 메시지, 2019. 4. 27).

45. 한국천주교회는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군사적 긴장이 상존하는 현재의 분단구조가 해체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 한국전쟁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적극적 동의 ②대체로 동의 ③대체로 반대 ④적극적 반대 ⑤잘 모르겠음

후보명	한국전쟁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 의견에 대하여
이재명	①적극적 동의
윤석열	<p>②대체로 동의</p> <p>&lt;답변 이유&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한반도의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며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우리의 희망이자 목표임. 다만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봄.</li> <li>○ 역사적으로 볼 때 평화의 조건이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그 평화협정이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의 참화를 불러왔던 일이 많았음.</li> <li>○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거울삼아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평화상태를 이룩하면서 이러한 기반위에서 법적 제도적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함.</li> <li>○ 현재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북한의 핵무장임. 북한이 핵무장하고 이것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를 억제하기 위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추지 않을 수 없고 주변국가들까지 군비증강에 나서는 등 동북아의 군비경쟁이 현실화되고 있음.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함.</li> <li>○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실행하면 상응한 대북경제지원을 할 것이며 완전한 비핵화시에는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여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할 것임. 또한 남북평화협정 등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들도 추진할 것임.</li> </ul>
심상정	②대체로 동의

[평화 증진을 위한 유엔의 대북경제제재 완화]

“경제적 제재는 지극히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수단이며, 엄격한 합법적 윤리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 경제 봉쇄는 기간이 한정적이어야 하며, 그에 따른 효과가 뚜렷하지 않을 때는 정당화될 수 없다”(『간추린 사회 교리』, 507항)

“(경제) 제재를 가하는 논리는 이해하지만, 교황청은 그 제재 조치가 효과적이라고 보지 않으므로, 경제제재 조치가 완화되길 희망합니다. 인도주의적 도움, 특히 의약품과 의료 장비의 유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시기에 매우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프란치스코 교황, 주교황청 외교단을 대상으로 한 신년 연설, 2021. 2. 8).

46. 전쟁의 야만성을 강력히 단죄하는 가톨릭 교회는 비군사적인 수단인 경제제재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특히 경제제재가 대상 국가의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장기간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는 대북경제제재의 실효성과 윤리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적극적 동의    ②대체로 동의    ③대체로 반대    ④적극적 반대    ⑤잘 모르겠음

후보명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재명	①적극적 동의 (다만, 스냅백 조항의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했음)
윤석열	<p>③대체로 반대</p> <p>&lt;답변이유&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것을 제재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는 대북경제제재 조치를 취한 것임. 따라서 경제제재의 완화나 해제는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된 문제임.</li> <li>○ 대북 경제제재는 현재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임. 만일 제재라는 수단이 소진되면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게 됨.</li> <li>○ 현재로서는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대북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북한으로 하여금 핵·미사일 보유가 자신의 안보와 경제에 손해가 된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다시 비핵화의 협상에 나오도록 해야 함.</li> <li>○ 대북 경제제재로 인해 무고한 북한 주민들이 고통 받을 수 있음. 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유엔 안보리결의는 인도지원을 제재의 예외로 인정</li> </ul>

	하고 있음. 윤석열 후보는 비핵화 전이라도 북한의 내부 상황을 고려하여 인도적 지원을 실시할 것임. 또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유엔으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아 대북 경제지원도 할 것임.
심상정	①적극적 동의

[평화 증진을 위한 군비경쟁 반대]

“전쟁 억지책이 어떠하든,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보호책으로 삼는 군비 경쟁은 평화를 확고히 유지하는 안전한 길이 아니며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균형도 확실하고 진실한 평화가 아니라는 확신을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한다. 군비 경쟁으로 전쟁의 원인들이 제거되기는커녕 오히려 점차 증대될 수밖에 없다”(사목 헌장 81항).

“국제 평화와 안정은 안보, 상호 파괴나 전멸의 위협, 단순한 권력 균형 유지에 관한 그릇된 의미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서는 안됩니다. (...) 이러한 맥락에서 핵무기 전면 폐기라는 궁극 목표는 하나의 도전 과제이자 도덕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명령이 됩니다”(『모든 형제들』, 262항).

47. 세계평화를 위한 바티칸의 노력은 재래식 무기의 군비축소뿐 아니라,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회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는 핵무기 확산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으며, 재래식 무기의 군비경쟁도 가속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군비축소의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적극적 동의    ②대체로 동의    ③대체로 반대    ④적극적 반대    ⑤잘 모르겠음

후보명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군비축소의 노력에 대하여
이재명	①적극적 동의 (단, 군비축소는 9.19 군사합의의 철저한 이행을 시작으로 하여 상호운용 통제 등 남북 동시 군비축소로 가야 함)
윤석열	②대체로 동의 <답변이유> ○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궁극적 목표와 재래식 군비축소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함. ○ 다만 북한의 핵능력을 도외시한 산술적인 재래식 군비통제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북한의 핵보유로 인한 전략적 비대칭 상태에서 상호주의적 군비축소는 불가

	(不可)하며,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이후 남·북간 재래식전력 군비축소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음.
심상정	①적극적 동의

## 사회복지위원회 질의

###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의 재개정 촉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2021년 8월 2일 발표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하 ‘탈시설 로드맵’)이 집중적인 돌봄과 보호가 필요함에도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지원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어려움에 놓여 있는 중증발달장애인, 최종증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지역사회 지원 체계 부족 등의 심각한 현실을 무시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이나 최종증장애인의 돌봄과 보호의 책임을 결과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전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더불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장애인 탈시설화’ 이전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부터 제시하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장애인의 장애 특성, 생애주기 등에 따른 선택권 보장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수립하기를 요청합니다.

셋째, 정부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새로운 ‘탈시설 로드맵’을 구축하기를 희망합니다.

향후 ‘탈시설 로드맵’을 비롯한 사회복지정책 수립과 추진,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 해당 정책과 법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가족,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등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함께 논의하여 진행하기를 촉구합니다. 특별히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천명하고 있는 인간 존엄성의 정신과 가치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대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의 입장문 중에서)

48. 발달장애인이 갖는 아픔을 깊이 숙고하여 정부가 추진한 ‘탈시설’ 정책이 아니라, 선진국 유럽처럼 ‘주거시설의 다양화’로 로드맵을 재개정할 필요성에 대해 동의합니까?

- ①적극적 동의    ②대체로 동의    ③대체로 반대    ④적극적 반대    ⑤잘 모르겠음

후보명	주거시설의 다양화로 로드맵을 재개정할 필요성에 대하여
이재명	③대체로 반대
윤석열	<p>②대체로 동의</p> <p>“지역사회돌봄 기반 조성”이라는 방향성으로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정책 추진과정에서 관련 단체, 관련 기관, 가족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p> <p>지역사회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단순한 ‘탈시설’ 정책이 아닌 ‘주거시설의 다양화’와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의 큰 우산하에서 장애인의 ‘돌봄’과 ‘삶의 질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의 컨소시엄 + 대기업의 자원 + 민간 사회투자 금융과 연계한 지역사회 실질적 실행체계 구축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겠습니다.</p> <p>당사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체험홈, 지원주택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도록 활동, 이동, 여가, 체육, 교육 등 사회서비스를 장애인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겠습니다.</p> <p>특정 서비스와 시설에서만 이용이 제한된 현행 바우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별 맞춤 계획을 수립한 후 장애인에게 직접 예산이나 바우처를 지원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하겠습니다. 개인예산제를 돌봄 서비스 영역에 우선 도입하여,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서비스 범위 확대하겠습니다.</p> <p>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가족 지원 체계를 장애인 복지관 등 지역사회 재활기관에 구축에 구축하여 긴급 돌봄, 가족 휴식 지원, 부모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입니다.</p>
심상정	④적극적 반대

48-1. 현재 거주시설의 종사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인과 종사자의 비율을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 방안에 동의합니까?

①적극적 동의 ②대체로 동의 ③대체로 반대 ④적극적 반대 ⑤잘 모르겠음

후보명	거주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인과 종사자의 비율 개선
이재명	①적극적 동의
윤석열	<p>②대체로 동의</p> <p>거주시설 종사자 비율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거주시설 종사자를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단일 임금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현재는 사업 유형이나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다수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p> <p>구체적으로는 현행 국고 지원 시설과 지방 이양 시설의 개별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일원화해 복지부 가이드 라인에 따르게 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p> <p>또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신변안전과 인권 보호, 폭력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며, 지역별 유휴 시설 등을 사회복지연수원으로 활용해 사회복지사들의 치유와 회복을 돕겠습니다.</p>
심상정	②대체로 동의

### [장기요양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2021년 한국의 고령화율은 16.39%로 10년 전보다 5% 이상 증가하였고, 2025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방소멸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고용과 소득보장, 건강증진과 의료 제공, 생활 환경과 안전보장,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 장려, 평생교육과 정보화, 노후설계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행 당시 21만 4천 명이었던 인정자 수가 2020년에는 86만 명에 육박했고, 2050년이 되면 248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급여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 약 8조에서 28조까지 약 3.5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요양의 보장성도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인식입니다. 정부의 지역 사회통합돌봄정책이나 Aging in Place(AIP)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등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가 가정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돌봄종사자의 처우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까지의 장기요양정책은 규제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반면, 종사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 비율 의무화와 같은 정책 시행에도 이렇다 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장기요양종사자 수급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9.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자 수의 증대, 보장성 강화, 돌봄 종사자의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기요양 제도의 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 방안 수립에 동의합니까?

①적극적 동의 ②대체로 동의 ③대체로 반대 ④적극적 반대 ⑤잘 모르겠음

후보명	장기요양 제도의 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 방안 수립에 대하여
이재명	①적극적 동의
윤석열	①적극적 동의
심상정	①적극적 동의

49-1. 규제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장기요양제도의 정책 개선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집중되어있는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정책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합니까?

①적극적 동의 ②대체로 동의 ③대체로 반대 ④적극적 반대 ⑤잘 모르겠음

후보명	장기요양제도의 정책 개선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권한 분배에 대하여
이재명	②대체로 동의
윤석열	②대체로 동의
심상정	②대체로 동의

49-2 지방소멸이라는 현실에서 장기요양이 Aging in Place(AIP)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대안 수립에 동의합니까?

①적극적 동의 ②대체로 동의 ③대체로 반대 ④적극적 반대 ⑤잘 모르겠음

후보명	장기요양의 Aging in Place(AIP)를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 수립에 대하여
이재명	①적극적 동의
윤석열	<p>①적극적 동의</p> <p>정부 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되고 있는 장기요양을 비롯한 모든 돌봄·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지역사회 중심, 이용자 맞춤형으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개인별 또는 가구별 돌봄 계정을 마련하여 이용자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돌봄과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p> <p>지역 내 모든 돌봄·사회 서비스 정보 제공, 서비스 안내·신청, 사각지대 발굴, 신규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합한 스마트돌봄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지역돌봄통합센터를 선정·운영함으로써, 지역맞춤형 돌봄·사회 서비스의 원스탑 상담-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p>
심상정	①적극적 동의

###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관련 정책]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이면서 생산활동을 하는 ‘작업장’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복지시설’에 준하는 규제와 일반기업에 적용하는 노동법 규제를 이중으로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우 기존에는 이용장애인이 일반기준근로자 대비 90% 이상의 생산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했는데, 2018년부터 기준이 70%로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대상 이용장애인이 확대되었습니다.

시설 규모에 상관없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상기 기준과 더불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장애인(‘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대상)을 최소 10명 이상 포함하여 시설을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80% 이상으로 생산성의 한계가 있으며, 근로 능력이 높은 장애인들과 훈련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야 할 시설 종사자들이 투입되어 벌어들인 수익으로 다른 장애인들의 임금과 수당을 충당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등 경영 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대부분의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중증장애인들이 단순임가공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낮은 생산성과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없는 한계로,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50.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역할은 근로활동 이외에도 장애인들에게 출·퇴근을 통한 규칙적인 생활과 또래 집단과의 유대 활동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주이용층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적응 역량을 향상시키는 역할 수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중요 역할 대비 현실에서의 시설 운영은 장애인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지급에 전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은 현재 일방적으로 시설이나 비영리 운영 법인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상기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적극적 동의    ②대체로 동의    ③대체로 반대    ④적극적 반대    ⑤잘 모르겠음

후보명	
이재명	②대체로 동의
윤석열	①적극적 동의
심상정	③대체로 반대

50-1.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시설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 중요 역할을 수행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 개선책 수립에 동의하십니까?

①적극적 동의    ②대체로 동의    ③대체로 반대    ④적극적 반대    ⑤잘 모르겠음

후보명	
이재명	②대체로 동의
윤석열	①적극적 동의
심상정	②대체로 동의

**[고령 장애인 전문 돌봄·의료 요양 서비스 지원 정책]**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등록 장애인 2,585,876명 중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은 1,206,482명(46.7%)으로 2013년 40%대를 넘어선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고령화 비율 14.76%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장애인 가구 구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인 가구인 경우(26.4%)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장애인의 고령화와 독거 생활 등으로 인해 돌봄 공백 및 사회적 고립

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고령 장애인이 지역사회 재활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고, 이는 이용 자격이 되지 않거나 시설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주변에 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고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보호 서비스나 낮 활동 서비스가 부재하고, 있더라도 대기시간이 길거나 고령 장애인에 대한 기피 현상 때문에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7). 중증장애인의 돌봄 부담을 부모나 가족들이 전적으로 떠안게 되면서 중증장애인과 부모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령화 문제가 점점 심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장애인 부모들은 부모 사후 장애인 자녀를 돌봐줄 시설들을 찾아 헤매고 있지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점점 줄어들어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현실이 지속한다면 위와 같이 장애인과 가족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51. 고령 장애인은 ‘장애’ 문제와 ‘노인’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진 취약층임에도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서 서로 다른 영역으로 취급되어 복지 서비스 간 연계 체계가 부재할 실정입니다. 장애인의 고령화가 전체 인구의 고령화보다 3배 이상 높고, 향후 고령 장애인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현재 고령 장애인(가족)이 직면한 부모 사후 장애인 당사자의 돌봄 및 의료(건강)지원 공백 등이 문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노인복지 분야의 경우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운영하는 돌봄·의료 전문 요양시설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 등으로 인해 고령 장애인 돌봄·의료 전문 요양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고령 장애인이 비장애 노인과 동일한 돌봄·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과 고령 장애인 전문 돌봄·의료 요양서비스 지원 강화(전문 요양원 설치·운영 등)를 위한 제도적 지원 정책 방안 수립에 동의합니까?

①적극적 동의    ②대체로 동의    ③대체로 반대    ④적극적 반대    ⑤잘 모르겠음

후보명	
이재명	②대체로 동의
윤석열	①적극적 동의
심상정	무응답

**[노숙인복지 정책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방향성]**

2012년 6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에 따라 노숙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노숙인 정책의 한계가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안전망의 체계가 없어 직접적인 위험 요소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탈시설 및 커뮤니티 케어에 기반한 정책이 확산되는 등 주거 우선 관점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사회 자립, 자활이 불가능한 노숙인 등에 대해서 마지막 사회 안전망으로써 종합복지 시설인 노숙인 시설에서의 보호 대책은 전무한 상황으로 노숙인 안에서 추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중앙정부 사업이던 노숙인 사업을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 결정함에 따라 노숙인에 대한 지역적 편차 심화가 가중되어 노숙인복지 서비스 공백이 우려됩니다. 같은 사회복지 업무를 함에도 노숙인복지 종사자는 처우와 인력지원에서 타 유형의 복지기관보다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52. 노숙인 복지사업의 지방이양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적극적 반대   ②대체로 반대   ③대체로 찬성   ④적극적 찬성   ⑤잘 모르겠음

후보명	
이재명	②대체로 반대
윤석열	②대체로 반대
심상정	②대체로 반대

53. 탈시설 및 커뮤니티 케어의 정책 추진 시 사회 안전망으로서 노숙인 시설의 역할과 시설 변화 및 지원 강화에 대하여,

53-1. 사회안전망으로서 노숙인 시설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적극적 동의   ②대체로 동의   ③대체로 반대   ④적극적 반대   ⑤잘 모르겠음

후보명	
-----	--

이재명	②대체로 동의
윤석열	<p>②대체로 동의</p> <p>노숙인 복지는 재활과 자립을 돕고,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삶의 질이 변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 지자체, 관련민간단체 그리고 노숙인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노숙인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모두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책임성과 함께 민간의 혁신과 효율을 담보하는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재구조화하고 이를 통한 커뮤니티 케어, 일자리 창출 등을 시행하여 노숙인복지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노숙인들의 ‘생존’과 ‘자활’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숙인들의 마지막 사회안 전망으로서 노숙인 시설의 역할강화, 노숙인 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등 큰 정책과 제도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금성 복지제도는 중앙정부로 일원화하여 예산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을 수행하고, 반면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노숙인들에 대한 ‘생존’과 ‘자활’을 지역사회통합돌봄시스템 내에서 구축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심상정	무응답

53-2. 노숙인 시설의 처우 개선 및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적극적 동의    ②대체로 동의    ③대체로 반대    ④적극적 반대    ⑤잘 모르겠음

후보명	
이재명	①적극적 동의
윤석열	①적극적 동의
심상정	①적극적 동의

### 청소년사목위원회 질의

[가정 폭력, 아동 학대 등의 문제에 따른 친권 제한 및 상실 보완책 법제화]

54. “가정은 여러 세대가 모여 서로 도와주며, 더 충만한 지혜를 얻고 개인의 권리를 사회

생활의 다른 요구와 조화시키는 곳”(사목 현장 52항)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완전한 발달과 그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정신적, 도덕적, 육체적, 심리적 행복을 보장하는 양육과 교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는 이를 위하여 법률과 시설을 마련하여 가정에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일에 협력하여야 합니다”(「가정과 인권」, 47항). 특히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에는 각별한 관심으로, 필요한 보조와, 심층적 원인의 제거를 위한 여론과 특히 문화적, 경제적, 사법 구조에 대한 결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가정 공동체」, 77항 참조).

현재 부모에 의한 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정의 청소년들이 부모의 친권 때문에 가정으로 복귀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가정 복귀 시점에서, 친권자의 요청에 앞서 청소년의 자발적 의사 표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미성년자와 힘없는 이들을 학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자신의 소임에서 해임된다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미성년자와 힘없는 이들의 보호」). 이와 관련하여 가정 폭력을 인지한 의사, 교사, 복지사 등이 청소년 본인의 동의하에 부모의 친권 제한 또는 상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친권 상실 이후 청소년의 안정적 주거 및 교육환경 조성을 뒷받침하는 방법이 법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①적극적 동의    ②대체로 동의    ③대체로 반대    ④적극적 반대    ⑤잘 모르겠음

후보명	
이재명	①적극적 동의
윤석열	②대체로 동의
심상정	①적극적 동의

### [아동 성착취 및 성폭력 관련 법규 강화]

55. 어떤 경우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이나 성착취와 학대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미성년자 성매수, 미성년자 성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미성년자와 힘없는 이들에 대한 보호가 복음의 가르침과 부합하다고 이해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와 힘없는 이들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하여 제도적 규범적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피해 아동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는 포용, 경청, 동반을 통한 정

신적, 의료적, 심리적, 법률적 지원과 사목적 보살핌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아동 성착취, 아동 포르노물을 가지고 있는 이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으나 [연방법 제18장(형법 및 형사소송법) 제2251조 이하 제2252(a)(4)(B)조], 우리나라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 성범죄자들 가운데 다수가 아동 성착취, 아동 포르노물 소지 후에,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러한 것들을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지만 해도 처벌할 수 있으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관련된 의사 표명을 온라인에 올린 글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 형량을 강화하고,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 형량을 강화하여, 아동 대상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더욱 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①적극적 동의    ②대체로 동의    ③대체로 반대    ④적극적 반대    ⑤잘 모르겠음

후보명	
이재명	①적극적 동의
윤석열	①적극적 동의
심상정	①적극적 동의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청소년 유관 센터들에 대한 예산 지원금 원천(자원) 변경]**

56. 가톨릭 교회는 사행 산업 발전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왔으며, 사행 산업의 비윤리성을 천명해 왔습니다(프란치스코 교황 말씀).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활동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복권판매수익금에서 마련된 전입금(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중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육성사업의 8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행 산업이 그나마 국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사행 산업 수익의 일정 부분을 다른 사회복지 기금에 출연할 수는 있겠지만, 현행처럼 청소년육성사업비가 사행 산업의 수익으로 구성된다는 점은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과 판단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활동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은 사행 산업이 아닌 국민의 정당한 세금인 국가 예산 안에서 편성되고, 사행 산업의 수익금 기여는 다른 사회복지 기금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①적극적 동의 ②대체로 동의 ③대체로 반대 ④적극적 반대 ⑤잘 모르겠음

후보명	
이재명	①적극적 동의
윤석열	③대체로 반대
심상정	②대체로 동의

[다문화 가정 아동, 청소년에 대한 규정]

57.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모두 “하느님의 모상”이므로(창세기 1,26-27 참조) 어떤 경우에도 그 존엄성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보잘 것 없는 이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마태오 25,31-46 참조)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들은 어느 누구도 피부색이나 국적, 인종, 성별, 사회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68항 참조). 이미 적지 않은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고, 아프리카 내전으로 인한 난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재집권에 따른 기여 입국자들의 입국 등으로, 이민자가 많은 서구 이민 사회가 청년으로 성장한 이민 배경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자녀, 중도입국 자녀, 난민 신청자 자녀, 미등록이민자 자녀)들의 사회 통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이민자들의 소요와 폭동을 겪는 것은 먼 나라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근본적 해소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등을 넘어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곧 현재 당연시되고 있는 주류인 한민족으로의 동화주의(assimilation) 정책을 수정하여,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체류 관리 중심 정책에서 생애주기 포용 정책으로 변화하고, 특히 미등록 이민자 자녀들을 포함한 이민자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교육권, 체류권, 의료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①적극적 동의 ②대체로 동의 ③대체로 반대 ④적극적 반대 ⑤잘 모르겠음

후보명	
이재명	①적극적 동의
윤석열	③대체로 반대
심상정	①적극적 동의

##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여성소위원회 질의

### [여성 노동]

58. 우리 사회에서 남녀 간 임금 격차, 여성의 노동 참여율, 남녀 간 노동 참여율 차이, 여성 실업률, 정규직 근로자 중 여성 비율 등을 조사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설팅 회사인 PwC와 삼일회계법인의 여성 경제 활동 지수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남녀 간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로 보고되었습니다(100% 대 63.5%). 성별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는 일이야말로 남녀 사이의 모든 차별을 줄여나가는 핵심 과업이 아닌가 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공약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후보명	
이재명	<p>성별에 따라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여성의 경력단절에 따른 낮은 근속연수, 연공급 임금체계, 유리천장, 성별 직종분리, 고용형태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 임금 차이 혹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p> <p>이를 해결할 공약은 아래와 같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법제화하여 성별·학력·고용형태·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 항목을 성별로 투명하게 공개, 격차 원인 분석을 통해 해소 계획을 수립, 실행</li> <li>- 노동위원회 산하 (가칭)고용공정위원회 설치하여 직장 성희롱·성차별 구제제도의 실효성 강화</li> <li>- 지방고용청 내 고용평등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성차별, 성희롱 사건의 지도 감독 및 진정 처리 추진</li> <li>- 전국 광역단위에 소규모 사업장 대상 성희롱·성차별 피해자지원 기관 설치</li> </ul>

	<p>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제도개선을 통한 실행력 강화</li> <li>-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도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확대</li> <li>- 공정임금법 제정 추진</li> </ul>
<p>윤석열</p>	<p>남녀임금격차의 25%는 기업 간, 75%는 기업 내에서 발생(OECD, 2021)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남녀 임금격차의 25%는 채용 및 재취업 단계에서, 75%는 근로 중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 전 단계에서의 성별 차이를 공시하여 기업간, 기업내 성별 격차를 확인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부터 퇴직까지 성별근로공시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채용단계에서는 신규 지원자, 경력직 지원자, 서류 합격자를 포함하여 지원부터 최종 합격까지의 성비, 근로단계에서는 부서별 근로자 성비, 승진자 성비, 육아휴직 사용자 성비, 퇴직단계에서는 해고자 성비, 조기 퇴직자 성비, 정년 은퇴자 성비 등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p> <p>또한 나이·직급·성별에 상관없이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하고 유연한 임금체제로 전환 유도하고자 합니다. 일한 만큼 보상받는 나라,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법(고령자고용촉진법,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하겠습니다.</p> <p>여성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채용부터 직장내 경력개발에 이르기까지 부당한 성차별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차별시정·구제제도 수립하겠습니다. 일-여가-가정을 균형 있게 추구하도록 노동시간 규범도 바꾸겠습니다. 학교에서 직업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사회 각 분야의 전문 멘토를 연결하여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p>
<p>심상정</p>	<p>노동시장 진입에서 장벽을 마주하고 있는 차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채용성차별 해소를 위한 채용성차별 관련 법 개정부터 고용 유지를 위한 전반의 법과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부터 임금공시의 후속조치를 점검 할 수 있는 정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등 성별임금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종분리, 고용단절, 임원비율 등의 실태조사, 성평등임금공시 후속조치를 위한 정부 책임 강화, 공시의무 미이행시 패널티 부과, 정부 컨트롤 타워 수립 등을 명시</li> </ul> </li> <li>●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 패널티 강화로 적극적고용개선조치 강화</li> </ul>

[여성에 대한 혐오 범죄, 가정 폭력]

59. 1997년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20년이 훨씬 넘었지만, 가정 보호 이데올로기로 인해 가정 보호 사건 송치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불기소처분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인이든 아동이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력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형사 처벌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공약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후보명	
이재명	<p>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폭력 근절을 위한 4대 공약을 마련하고 대응하고자 젠더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불안 해소,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 등 4대 공약 마련했습니다.</p> <p>먼저, 젠더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구체적 공약으로는 ▲황예진법(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을 포괄하도록 스톱킹범죄처벌법 상 범죄유형 확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추진,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접근 감지하는 IT기술 개발·상용화 추진, ▲성폭력 피해자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보보호 강화 등을 마련하였습니다.</p> <p>둘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아동 강간 시 무관용 원칙 적용해 처벌 강화,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연령 상향 및 공소시효 기간 연장, ▲수사·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진술 돕는 지원제도 강화 ▲아동·청소년 그루밍 범죄 수사 담당 및 성착취물 유통 차단 국제공조 담당 전문인력 확충 등의 공약을 마련하였고,</p> <p>셋째,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불안 해소를 위해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불법촬영물·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환수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전국 광역단위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범죄 악용 우려 있는 변형카메라 유통이력 관리 위한 등록제 도입, ▲성착취물 유포·확산 예방 위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성 강화 및 관련 기술개발 투자,</p>

	<p>▲딥페이크 음성·영상 대상 표시의무제도 시행을 마련하였으며, 넷째,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을 위해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직속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설치, ▲군대 내 성고충전문상담관 확대 배치 및 권한 강화, ▲군 인권보호관 독립성 보장, ▲미신고 피해자를 위한 ‘신고 전 지원제도’ 도입, ▲2차 가해 처벌 강화 및 2차 피해 대응 체계 강화, ▲군 성범죄 연례보고서 발간 및 대국민 공개 공약을 마련했습니다.</p>
<p>윤석열</p>	<p>우선 ‘통합가정법원’을 마련하여 아동학대·가정폭력·연인폭력 등 가족법과 젠더폭력 관련 형사법 사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5대 젠더폭력(가정폭력,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단계(예방-신고-수사-법원연계-가석방·출소-출소후-피해자지원 단계)별 통합적 대응체계 마련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해 피해 발생 초기에 신속히 예산을 집행하고 직접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법무부 직속 범죄피해보호국(종전, 여성가족부 일부 업무 포함)에 ‘권력형 성범죄 조사 및 피해자 구제 특별 기구’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피해자에게 상담·치료·법률지원 등 제공하며 나아가 피해자 정보 유출이나 구성원들의 회유 등으로 인한 2차 가해를 방지, 범죄피해구제 AI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 국민에게 one-stop으로 법률상담과 치료지원 등의 구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p>
<p>심상정</p>	<p>가정폭력은 자녀 및 피해자 가족 등을 불모로 피해자를 협박·회유 등이 가능하고 재발 위험이 매우 높으나, 단순한 ‘가족관계’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합니다. 1조 입법 목적을 혼인 여부로 규정하지 않고, 친밀한 관계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면개정 해 나가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여성 인권보장</li> <li>- 가정의 평화와 안정이 목적인 입법목적 조항부터 개정</li> <li>- 가해의 보호처분 이행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li> <li>-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재범방지</li> <li>- 피해자 초기 응급대응 및 보호·자립 지원 강화</li> </ul>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지급]

60.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위한 강력하고 명확한 실행 의지가 담긴 법 체제와 이를 감시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 배우자에게 파산할 정도로 강력한 조치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자녀의 복지와 밀접히 연관된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귀 당 후보자는 어떤 공약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후보명	
이재명	<p>먼저, 양육비 이행상황을 한눈에 파악하여 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아동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 채무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를 도입하겠습니다.</p> <p>또한,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부모가족 지원제도가 낙인과 정책 소외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그 밖의 고충들은 더욱 폭넓게 살피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의 소득 기준을 없애겠습니다. 증명서가 빈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가족형태를 증명하는 용도로만 쓰이도록 바꾸고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p>
윤석열	<p>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심의 시 의견진술기간을 3개월에서 50일로 단축하고 명단 공개 시 공개되는 신상 정보에 이름, 직업, 근무지 외 사진까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국금지 요청 가능한 양육비 채무 기준을 현행 5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양육비 이행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신청·접수부터 상담, 관계기관 정보 조회 연계 중 양육비 이행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법적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미지급하는 부나 모의 신상공개를 포함하여 양육비 미지급 건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에게 선지급하고 이후 추징하는 ‘양육비 정부 선지급’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
심상정	<p>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위해 대지급 제도 개선 및 양육비 이행 강제 조항을 강화하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육비 대지급 제도 개선 및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육비 이행률 제고: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 재산 조회 근거 마련, 신속한 행정 제재 조치, 양육비 불이행기간 90일에서 30일로 줄여 감치명령 신청 요건 완화, 입증 책임 전환</li> <li>- 양육비 이행 지원체계 개편: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 상설화 및 양육비 이행 지원 사무국 신설, 양육비이행관리원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전국확대, 신청 법률 추심지원 제재조치, 양육비 이행 등 전 과정을 시스템화하는 원스톱 양육비이행지원시스템 구축</li> </ul> </li> <li>●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확대와 정책 사각지대 개선</li> </ul>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자격요건 완화(사별 등의 사유로 양육비 채권을 보유할 수 없는 경우 등 사각지대 완화)</li><li>- 취약 위기 한부모 긴급 양육비 지급 방식 개선 (기존) 월 20만원, 1년간 지급 → 월 지급 또는 일시금 지급 중 선택 개선</li><li>-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확대</li></ul> |
|--|



## 생명윤리위원회 질의에 대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답변 평가

### [인간 생명과 낙태]

1. 교회는 생명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연적인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모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돌보는 것은 우리의 책무요, “인간의 생명과 죽음은 하느님 손에, 그분 권능에 달려”(『생명의 복음』, 39항) 있다고 가르친다.

**낙태**에 대하여 이재명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윤석열 후보는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점진적 수용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토대로 안전한 임신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세 후보 모두 교회의 입장과는 반대되며 특별히 심상정 후보의 반생명적 입장은 구체적이다.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물질적 토대와 사회적 제도 마련**에 대하여 세 후보 모두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위 물음에 대해 윤석열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시한 점은 돋보인다. 윤석열 후보의 난임 휴가 기간 3일에서 7일로 확대, 산후 조리에 대한 국가 지원, 자녀 출산 후 1년간 월 100만원 지원,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기간의 확대는 발전된 공약이라고 볼 수 있다. 심상정 후보는 정당의 성격상, 노동자의 입장에서 공약을 제시했다. 육아 휴직과 육아 휴직 급여 인상, 출산 전후 휴가 기간 확대, 국가 차원의 ‘대체인력센터’ 운영 등에서 잘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세 후보 모두 출산 전의 생명과 후의 생명에 대한 구분을 짓고 있다.

### [차별 금지와 평등]

2. 교회는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에 적극 찬성하지만, 차별 금지의 이름으로 남자와 여자의 성과 사랑, **혼인과 가정**에 대한 특별한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교회가 우려하는 **성적 정체성과 지향**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다양한 의견 수렴, 윤석열 후보는 위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위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자기 결정권의 존중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거기에 더해 동성혼과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는 제도화에 찬성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의 입장은 교회의 가르침과 극명하게 대립된다고 볼 수 있다.

### [혼인과 가족]

3.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지속적이고 전적인 결합으로 “서로를 완성하고, 관심과 배려, 그리고 출산을 통해 자연스러운 인생 여정을 걷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에 속한다. 이재명 후보는 노년의 고령 커플 등의 형태도 가족의 범위로 포함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윤석열 후보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가족 형태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좀 더 구체적으로 비혼 동거 및 비혼 출산, 앞선 문항에서는 동성혼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교회의 가르침과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

4.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의 대상 범위에 확대에 대하여 세 후보 모두 적극적인 입장이다. 또한 시설의 확충과 국가 지원 등에 있어서도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 정의평화위원회 질의에 대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답변 평가

### [사형제도]

5. **사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이재명 후보는 찬성하지만, 전쟁범죄, 집단살해 등과 같은 범죄는 예외로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제의 완전한 폐지는 사회의 성숙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심상정 후보는 찬성한다.

#### <교회의 가르침>

“사회가 부과하는 처벌의 첫 번째 목적은 ‘잘못으로 발생한 피해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려면 처벌의 본질과 범위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결정하여야 하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곧 다른 방법으로는 사회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극단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생명의 복음』, 56항).

### [이주민]

6. **외국인 노동자가 자국 노동자와 차별 없이 노동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에 대하여,

- 1) 이재명 후보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2) 윤석열 후보는 찬성하며, 미래지향적인 내외국인 상생의 외국인력정책을 추진하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고, 외국인 인력정책을 전담할 콘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 3) 심상정 후보는 찬성하며, 이주민 전담기구 설치 및 이민법 제정, 노동비자 영주제도 도입과 인권친화적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교회의 가르침>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할 권리들을 자국인과 동등하게 누리도록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외국인 노동자들을 착취하려는 생각이 확산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신중하게 감시하여야 한다. 평등과 공평의 기준에 따른 이민 규제는 이민이 그들의 인간 존엄을 인정받으면서 사회에 통합될 수 있게 보장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다. 이민들은 인간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그들의 가족과 함께 사회생활의 일원이 될 수 있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간추린 사회 교리』, 298항).

## [난민]

7.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 위한 난민심사의 제도적 개선과 난민 인정자를 위한 정착지원 기반의 확대에 대하여, 세 후보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회의 가르침>

“이는 특히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피해 온 이들을 향한 몇몇 필수 불가결한 응답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비자 발급 확대와 간소화, 개인과 공동체 후원 프로그램 채택, 가장 힘없는 난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통로 개설, 적절하고 품위 있는 주거 제공, 개인의 안전과 기초 서비스 접근 보장, 적절한 상담 지원과 신분증을 소지할 권리 보장, 공정한 사법 제도 접근, 은행 계좌 개설 가능성과 최저 생계비 보장, 임시 보호나 환대 프로그램 제공, 종교의 자유 보장, 사회 통합 촉진, 가족의 재결합 지원, 지역 공동체의 통합 절차 마련이 있습니다”(「모든 형제들」, 130항).

## [언론의 자유와 책임]

8.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의 수준에 대하여, 이재명 후보는 높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윤석열 후보는 높은 편이었지만,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 등으로 하락하였다고 응답했다. 심상정 후보는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 등 위해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 책임의 수준에 대하여, 세 후보 모두 낮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9. 언론 자유 보장과 더불어 공권력의 정당한 감시와 조치에 대하여, 이재명 후보는 찬성하며,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의 추진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윤석열 후보는 기타의견으로 매체별 특성에 따른 자율규제와 자율규제의 적절한 배분과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심상정 후보는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교회의 가르침>

“국가 권위는 자기 임무로서, 현대 사회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진실하고 공정한 정보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옹호하여야 한다. 국가는 법률의 공포와 효과적인 적용을 통하여, 사회 매체의 오용으로 공중도덕과 사회 발전에 중대한 위험이 미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공권력은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아야 할 각 사람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제재해야 한다. 공권력은 대중의 이익에 관계되거나 대중의 근거 있는 불안을 해소시켜 줄 정보를 제때에 성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대중 매체를 통해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할 수 없다. 이러한 개입으로써, 개인과 집단의 자유를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498항).

##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

10. 공영방송(KBS, MBC)의 이사 추천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방송법 개정에 대하여,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찬성한다고 응답하였고, 윤석열 후보는 기타 의견으로 정당의 정파성 배제와 국민의 대표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언론 관계법의 개정에 대하여,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찬성한다고 응답하였고, 윤석열 후보는 기타 의견으로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법적 노력은 계속하되, 뉴미디어 상황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교회의 가르침>

“정보는 민주적 참여를 위한 주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이다. (...) 정보의 객관성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가운데, 특별히 주목하여야 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이나 집단들이 조종하고 있는 뉴스 미디어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에, 정치 활동과 금융 정보 기관들의 유착까지 더해지면 이는 전체 민주주의 제도에 위험한 결과를 미친다”(『간추린 사회 교리』, 414항).

## [경제 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11. 경제 민주화와 이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에 대하여,

1) 이재명 후보는 ‘전환성장’과 ‘공정성장’이 두 뼈대라고 밝혔다. 전환성장이란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확충에 선투자하고, 핵심 기술역량과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고, 공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과 같은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 전국민 고용보험·산재보험과 같은 안전망, 납품단가 연동제 등과 같은 시장 주체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조치들, 지역간·경제주체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2) 윤석열 후보는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여 성장률 상승과 출생률 증가, 소득분배 개선이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소득분배를 단순히 가진 사람에게서 빼앗아 저소득자에게 나눠주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성장과 사회변화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면적, 심층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고, 독과점 규제나 갑의 횡포로부터의 보호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3) 심상정 후보는 새롭게 독점 세력화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독점 방지를 위한 법안 제정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기존 재벌에 집중된 경제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계열분리·기업분할 명령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체제 마련을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납품업체들의 집단교섭 보장 및 납품단가 연동제, 증거개시제도, 소득 재분배를 위한 최고임금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11-1.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1) 이재명 후보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을 들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과 수당 확대, 장년 수당 도입 및 아동, 청소년 수당 확대 등 복지 정책의 개편을 통한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 윤석열 후보는 자산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펴고,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의 지속적인 확충을 경제정책의 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불공정 행위 엄단,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및 고용친화적 환경 구축,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성장 사다리 복원 등 민간의 자율성 제고를 통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3) 심상정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하고, 개발이익환수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시민의 노동권을 강화(평등수당, 최소노동시간보장제, 성평등임금공시제, 최고임금법 등)하고, 국가를 통한 소득보장인 시민평생소득(시민최저소득 100만원, 전국민소득보험, 범주형 기본소득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교회의 가르침>

“일정한 사회 집단을 위하여 온갖 물질 재화를 지나칠 정도로 확보해 주는 것은 사람들을 자칫하면 ‘소유’의 노예, 즉각적인 충족의 노예로 만든다”(『간추린 사회 교리』, 334항).

“경제 활동은 공동선의 추구를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 공동체가 공동선에 대한 책임을 맡아야 합니다. 따라서 경제 활동을 단순히 부의 창출 수단으로 여기고 정치 활동을 재분배를 통한 정의 추구의 수단으로 여겨, 경제 활동과 정치 활동을 분리할 때 심각한 불균형이 야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진리 안의 사랑」, 36항).

### [경제와 공동재화]

#### 12. 의료, 철도, 에너지 등 공공부분 민영화 중단 및 사회공공성 확대에 대하여.

1) 이재명 후보는 찬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으로 KTX와 SRT 통합,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추진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설립,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공공병원 확보를 제시하였다.

2) 윤석열 후보는 기타 의견으로 의료, 운송, 에너지 부문의 공공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동시에 기술혁신을 통해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문이 되도록 변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3) 심상정 후보는 찬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으로 건설, 교통 등 SOC 사업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 확대 금지, 공공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대, 병원비 연간 100만 원 상한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공공이 책임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 <교회의 가르침>

“국가는 공동재화를 옹호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공동재화들은 시장의 메카니즘만으로 보호할 수 없는 자연환경 및 인간환경을 말한다. 원시자본주의 시대에 국가가 노동의 기본 권리를 보호해야 했듯이,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에 국가와 사회는 공동재화를 보호해야 하는데, 이 공동재화는 각 개인의 삶의 필수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각 개인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정당하게 성취할 수 있다”(「백주년」, 40항).

### [공공복지 확대]

13. 의료 보장성 강화, 국가 책임 보육, 보편적 기초연금 등 복지 확대의 필요성에 대하여, 세 후보 모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에 대한 핵심적 정책공약으로

- 1) 이재명 후보는 의료 보장성 강화, 국가 책임 교육(초등, 영·유아 돌봄 국가 완전 책임제), 보편적 기초연금 지급을 들었으며,
- 2) 윤석열 후보는 현 사회보장체계 내의 취약 계층 지원 강화, 만 0~5세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들었고,
- 3) 심상정 후보는 병원비 연간 100만 원 상한제 도입, 친환경 국공립보육 50% 확대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기초연금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을 들었다.

### [기본소득]

14. 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액을 지원하는 기본소득에 대하여,

- 1) 이재명 후보는 찬성하며, 전국민 보편기본소득 추진, 청년 기본소득 지급,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아동수당 확대, 청소년 수당 신설, 장년수당 지급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하였다.
- 2) 윤석열 후보는 기본소득과 같은 무조건적인 현금복지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 3) 심상정 후보는 기타의견으로 시민의 사회적 역할을 지원하는 범주형 기본소득 도입을 제시하였다.

### [부동산]

15. 투자 대상 이전에 보금자리로서 부동산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 1) 이재명 후보는 찬성하며, 이를 위한 핵심적 정책공약으로 튼튼한 주거사다리를 놓아 청년,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집걱정 완전 해소, 전국 311만호(서울 107만호)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 실현,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급,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로 ‘반값아파트’ 공급, 기본주택 140만호 공급(장기임대형 80만호+분양형 60만호)을 제시하였다.
- 2) 윤석열 후보는 기타 의견으로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

고 국민들의 주거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전국 250만호(수도권 130만호 이상) 주택 공급, 과도한 대출규제나 부동산세제의 합리적 개편, 50만호의 공동임대주택 건설, 청년월가주택 30만호, 역세권첫집주택 20만호 공급 등을 들었다.

3) 심상정 후보는 찬성하며, 제2의 토지개혁으로 부동산 불평등 해소 및 투기 근절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부동산 세제 강화, 개발사업 초과개발이익 50% 이상 환수, 민자사업 투자액 대비 상한제 실시, 주택소유상한제 도입,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등을 들었다.

#### <교회의 가르침>

“재화의 보편적 목적의 원칙은 가난한 이들, 소외받는 이들, 어느 모로든 자신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는 생활조건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사랑과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내리는 결정은 당연히 수많은 굶주리는 사람들과 곤궁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간추린 사회 교리』, 182항).

### [정치-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

#### 16. 사법 개혁에 대하여,

- 1) 이재명 후보는 찬성하며, 이를 위한 핵심적 정책공약으로 법원행정처 개혁, 법원에 대한 국민평가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 2) 윤석열 후보는 기타 의견으로, 재판에서 국민 참여 확대, 재판에 전문가 참여 등으로 독과점화된 재판 구조를 탈피하여 다양성과 민주성을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3) 심상정 후보는 찬성하며, 이를 위한 핵심적 정책공약으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체와 법원 민주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다양성 보장,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비리 척결 등을 들었다.

#### 17.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검찰 개혁에 대하여, 세 후보 모두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이재명, 심상정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방향은 상반된다.

- 1) 이재명 후보는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재정신청제도의 개선, 수사절차법제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 2) 윤석열 후보는 현정부의 검찰 개혁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검찰개혁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면서,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의 검찰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와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로 절차 단순화를 제시하였다.
- 3) 심상정 후보는 국가수사체계 개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가 범죄수사 체계 개편 완수를 위한 국회 추진기구 설치, 공수처, 검찰의 수사권 통제를 위한 옴부즈맨제도 도입, 공수처 수사권과 기소권 일치 및 수사대상 축소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교회의 가르침>

“정치 책임자들은 정치적 대표성의 도덕적 차원, 곧 국민의 운명과 온전히 함께하며 사회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망각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책임 있는 권위란 봉사의 정신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덕목들(인내, 겸손, 온건, 애덕, 함께하려는 노력)에 따라 행사되는 권위, 명예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동선을 활동의 참된 목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행사하는 권위를 의미한다” (『간추린 사회 교리』, 410항).

오늘날 일반화되어 있는 “민주주의 제도의 가장 심각한 결함 가운데 하나는 도덕 원칙과 사회 정의 규범을 한꺼번에 짓밟는 정치적인 부패”(간추린 사회 교리, 411항)이며, 부패의 대표적인 형태는 “뇌물, 횡령, 권력 남용, 관직 비호”(DOCAT, 194항) 등입니다. 이러한 “부패의 무도한 탐욕은 약자의 미래 계획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가장 가난한 이들을 무참히 짓밟아 버립니다”(「자비의 얼굴」, 19항).

**[노동 - 정의로운 전환(일자리 구조 변화)]**

18.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

- 1) 이재명 후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의로운 전환’ 방향과 원칙 그리고 유럽연합(EU)의 ‘정의로운 전환계획’(Just Transition Scheme)을 반영한 한국형 ‘정의로운 전환체계’를 마련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노동전환 이행 및 지원체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2) 윤석열 후보는 정의로운 전환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칭)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공정노동전환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3) 심상정 후보는 ‘노동전환지원법’ 제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위원회’ 설치, 녹색산업 중심 과감한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노믹스’ 실현, 국가일자리보장제로 1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였다.

<교회의 가르침>

“인간의 노동이 표현되는 역사적 형태는 변화하지만, 노동자들의 양도할 수 없는 인권에 대한 존중으로 요약되는 노동의 조건은 영구불변이다. 그 변화가 실질적인 것일수록, 다양한 차원에서 관련 제도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동의 존엄을 수호하는 지혜와 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모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현재의 변화가 지역 경제와 세계 경제 차원, ‘구’ 경제와 ‘신’ 경제, 기술 혁신과 인간 노동을 보호할 필요성, 경제 성장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발전 등이 서로 보완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 이는 매우 절실하다. - 최선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이끌 수 있다”(『간추린 사회 교리』, 319항).

“인류를 배제하지 말아야 하는 온전한 생태론에 대한 모든 접근에서 노동의 가치를 포함시키는 것은 필수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는 회칙 「노동하는 인간」에서 이를 잘 설명하셨습니다. (...) 하느님께서서는 당신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 사람들 두시어, 그곳을 보존하게(돌보게) 하셨을 뿐 아니라 열매를 맺도록(일구도록)하셨습니다. (...) 그러

므로 오늘날 세상의 사회 현실은, 편협한 기업 이윤과 모호한 경제적 합리성을 뛰어넘어, '계속하여 모든 사람의 안정된 고용 보장을 최우선 과제'(「진리 안에 사랑」, 32항)로 삼을 것을 요구합니다. ... 노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동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에 속하며, 성장과 인간 발전과 개인적 성취의 길입니다”(「찬미받으소서」, 124항; 127-128항).

19.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 차원 접근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으로,

1) 이재명 후보는 혁신대학도시 건설 등 지역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 윤석열 후보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및 혁신창업을 대폭 지원하여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3) 심상정 후보는 국가일자리보장제로 청년 일자리 30만 개 창출을 제시하였다.

<교회의 가르침>

“‘완전고용’은 정의와 공동선을 지향하는 모든 경제 체제에서 의무적인 목표이다. 노동권이 방해받거나 제도적으로 부인되는 사회, 노동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수준의 고용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제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회는 ‘윤리에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사회적 평화를 달성할 수도 없다’(「백주년」, 43항). 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 따라서 특별하고 막중한 책임이 ... 국가나 국제 차원에서 노동 정책이나 경제 정책들을 지시하는 위치에 있는 주체들 - 개인이나 다양한 유형의 기관들 - 에게 돌아간다”(『간추린 사회 교리』, 288항).

### [5인 미만 사업장 차별과 근로기준법 개정]

20.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에 대하여,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 즉각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윤석열 후보는 확대에 찬성하나 당분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회의 가르침>

“이전에는 대기업들에서 맡던 여러 생산 작업들을 소규모 업체들에 나누어 주는 생산의 탈집중화는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 그러나 이러한 부문들에는 부당한 대우와 박한 임금,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가 따르는 노동의 사례가 드물지 않다. (...) 이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매우 비참한 노동조건에서, 노동자의 존엄을 보호하는 법령이 미비한 가운데 일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생산과 임금 수준, 생활수준이 매우 낮으며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간추린 사회 교리』, 315-316항).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부녀 노동자는 남자와 같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교회는 항상 지지해 왔다. 값싼 임금 때문에 여성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부정이며 공익에 어긋난다”(교황 비오 12세의 이탈리아 가톨릭 여성 노동자에게 하신 말씀, 1945. 8. 15.).

### [노동 안전과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21.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공약에 대하여,

- 1) 이재명 후보는 후진적 산재사망 ‘Zero’추진, 산업재해 예방 지원 대폭 확대, 산업안전보건 감독 강화, 산업안전보건 노동자 참여 확대를 제시하였다.
- 2) 윤석열 후보는 산재 취약사업장에 대한 예방 기술 및 예산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형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관련 기관의 기술지원 컨설팅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 3) 심상정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산재치료 및 요양에 대한 선보장제도 전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노동 안전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한 전담기구로 제안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하여,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찬성한다고 밝혔고, 윤석열 후보는 우선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등 관련기관 및 이해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산업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교회의 가르침>

“건강 보호를 위한 비용, 특히 노동 중에 일어나는 사고의 경우, 의료 혜택이 노동자를 위해 쉽게 베풀어져야 하며, 가능한 한 그 혜택은 저렴하거나 무상이어야 한다. 다른 측면은 휴식의 권리와 관련된 분야이다. ... 사회 보장의 셋째 분야는 연금의 권리와 노후 대책 그리고 산업 재해 보험에 대한 권리이다. ... 이러한 권리들 가운데서 노동자의 신체적인 건강이나 정신적인 건강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 노동환경과 작업 환경에 대한 권리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노동하는 인간」, 19항).

### [노동조합의 활동 보장과 기업의 과도한 노조 손배가압류 제한]

22. 손배 가압류의 두려움 없이 노동자의 파업권 및 단체행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 1) 이재명 후보는 찬성하며,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및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 2) 윤석열 후보는 현행법에 따라 적법한 쟁의행위와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구분해야 해야 하고, 쟁의행위의 적법성 판단의 확대 여부는 사법부의 몫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사가 자율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조정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 3) 심상정 후보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라 노동조합법을 개정하고, 손배 가압류를 제한

하며, 노조활동보장을 위해 ILO 기준에 맞게 고용관계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 모든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교회의 가르침>

“노동자들이 참으로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경제 생활의 올바른 질서 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를 자유로이 결성할 권리, 또한 보복의 위험 없이 단체 활동에 자유로이 참여할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사목헌장 68항).

“노동자들은 파업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따라서 파업에 참여했다고 하여 어떠한 개인적 처벌이나 규제를 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노동하는 인간」, 20항).

### [일하며 쉴 권리 - 상병수당 도입]

23. 소득의 상실로 생활이 막막해질까 걱정되어 아파도 일을 쉴 수 없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소한의 보호를 위한 **상병수당 제도**에 대하여, 세 후보 모두 찬성하다고 응답하였다.

<교회의 가르침>

“노동자의 권리는 다른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과 탁월한 인간 존엄에 바탕을 둔다. ... 그것은 휴식의 권리, ... 실직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생계에 필요한 적절한 보조금에 대한 권리, 연금에 대한 권리와 노후, 질병, 직업 관련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대한 권리 ... 등이 있다”(『간추린 사회 교리』, 301항).

### [노동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간 격차 해소]

24. 현재 법적인 정년 연령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입니다. 정년에서 국민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기간은 수입이 없는 기간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간 격차를 해소할 대책**에 대해서,

1) 이재명 후보는 연금수급기간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계속 고용 정책을 실시하고, 정년 연령의 인상, 계속고용제도의 도입(근무연장제도, 재고용제도), 정년제 폐지 등 다양한 방식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 윤석열 후보는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이며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실질적인 고용연장과 정년 연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 심상정 후보는 60대 일자리정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연령 상향을 제시하였다.

<교회의 가르침>

“노동자의 권리는 다른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과 탁월한 인간 존엄에 바탕을 둔다. (...) 실직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생계에 필요한 적절한 보조금에 대한 권리, 연금에 대한 권리와 노후, 질병, 직업 관련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대한 권리 ... 등이 있다”

(『간추린 사회 교리』, 301항).

“임금 외에도,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보장이 여기서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 사회 보장의 셋째 분야는 연금의 권리와 노후 대책 그리고 산업 재해 보험에 대한 권리이다”(『노동하는 인간』, 19항).



## 생태환경위원회 질의에 대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답변 평가

### [농업]

25. **식량자급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동의를 표했다. 윤석열 후보는 기초농산물 국가 구매 방식에 대해 국가재정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심상정 후보는 식량 주권 수호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26. **쌀값 안정과 식량 안보 차원의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남북협력에 대하여 개방적인 자세를 보였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대북 쌀 교류에 조건을 내걸어 문제 해결의 의지가 적어 보였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교회의 가르침>

“국제 협력 정신에 요구되는 것은 순전한 시장 지향적 사고를 넘어선, 연대와 정의, 보편적 사랑의 의무에 대한 인식이다”(『간추린 사회 교리』, 448항)

27. 현대의 농업은 인간 노동의 편리를 위하여 하느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농법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세 명의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모두 **‘무분별한 유전자 조작’에 대한 경각심**을 포함하고 있어 긍정적이다.

28. **친환경 유기농업 전환, 토종 종자 보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찬성을 표하고 여러 공약을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도 친환경 유기농업을 적극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도 농어업의 생태적 전환과 생물종다양성 보장 등을 위한 공약을 알렸다.

#### <교회의 가르침>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 요구를 충족시키는 농산품을 장려하여야 한다.”(『간추린 사회 교리』, 486항)

29. 재화의 보편적 목적을 성취하고,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데 긍정적이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친환경 농사를 지향하는 농민들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찬성을 표했다. 윤석열 후보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심상정 후보는 구체적으로 농어민기본소득 월 30만 원 지급을 제시했다.

#### <교회의 가르침>

“빈곤 퇴치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교회의 우선적 사랑 또는 선택에서 강한 동기를 얻는

다. 교회는 교회의 사회 교리 전체를 통해서 이 교리의 몇몇 근본 원칙들, 특히 무엇보다도 재화의 보편적 목적에 대하여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다.”(『간추린 사회 교리』, 449항)

#### [4대강 재자연화]

30. 4대강 생태계와 국민 건강을 위해 4대강에 설치된 보와 댐을 철거하는 4대강 재자연화 답변에서 이재명 후보는 못 생명이 더불어 살아나는 재자연화를 답변했다. 윤석열 후보는 기후위기 시대에 수자원 확보와 활용, 수질과 생태계를 고려한 결정을 답해 두 후보 모두 원칙적인 수준에서 동의를 표하였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 앞의 두 후보보다 새만금 해수유통, 하구둑 개방, 철거 복원계획 등 구체적인 4대강 보 처리 이행 공약을 답변했다.

31. 한강, 낙동강 보 처리와 영주댐 해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한강,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 논의를 통한 처리방안 마련이라는 지역 중심의 답변을 했다면, 윤석열 후보는 국가물관리위원회 단위에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관리 대책에 방점을 둔 처리방안을 답변했다. 영주댐 해체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모니터링을 통한 전면 재검토와 신속한 진행을 약속한 반면 윤석열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32. 임기 내 4대강 재자연화 실현에 대한 정책 질의에 이재명 후보는 유역과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 종합대책 수립과 추진을 약속했다. 또 4대강 인근 산단 폐수 관리 강화와 소하천 종합관리 등 가운데 세부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윤석열 후보는 재자연화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대신 앞서 두 질문(30항, 31항)과 같은 수량, 수질을 고려한 균형 처리와 이해당사자들과의 대화 등을 답변으로 내놓아, 사실상 4대강 재자연화 실현 정책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심상정 후보는 ‘하구역복원특별법’ 제정 등을 공약하였다.

#### <교회의 가르침>

환경보호는 온 인류의 과제이며, 공동의 보편적 의무, 공동선을 존중할 의무이다. 경제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며, 인류 공동유산인 환경에 대한 책임은 미래 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이다(간추린 사회교리 467항, 470항 참조)

#### [탈핵]

33. 이재명 후보는 2030년 탈핵에 대해 부정적이나, 신규 핵발전소는 건설하지 않고, 수명연장을 금지하며,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반해, 윤석열 후보는 탈핵반대 입장을 내었다. 심상정 후보는 2040년 탈핵 의견과 탈핵기본법제정에 관해 밝혔다.

34. 탈핵법제화에 관해 이재명 후보는 법제화에 대해 소극적이며, 윤석열 후보는 법제화에 반대한다. 심상정 후보는 확고한 법제화 의지가 있으며, 원자력진흥법폐지, 원자력규제위원

신설, 사용후핵연료재처리, 재활용금지, 직접처분, 파이로프로세싱 관련사업 중단 등에 관한 의견을 내었다.

35. **핵폐기물 전담 기구 설치와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이재명 후보는 다소 소극적이나 독립행정위원회 설치와 핵폐기물 처분 로드맵 구성에 대해 언급했다. 윤석열 후보는 독립기구 설치에 대한 언급이 없어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고, 기존 핵산업계와 동일한 입장을 보이며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성에 대해 무지한 것으로 보이는 답변을 내놓았다. 심상정 후보는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며, 지역 형평성, 환경정의에 따른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을 원칙으로 법제화 의견을 내었고, 지역주민,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용후핵연료관리 재검토위원회 구성 등 가장 현실적인 답변을 했다.

36. **핵발전소의 오염수 문제에** 대하여 이재명 후보는 감시시스템확충과 지역주민건강영향 조사확대 등에 관해 진일보한 의견을 내었으나 일본 오염수 방출대응은 원론적 입장이다. 윤석열 후보는 국내 오염수 배출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이며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관해서도 일본의 이행을 확인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의견을 내었다. 심상정 후보는 국내 방사성 물질 배출 피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일본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는 배출 저지를 위한 실질적 행동, 국제적 대책기구와 시민사회진영과의 공조, 경우에 따라 일본 농수산물 수입금지와 구상권 청구 등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교회의 가르침>

“핵발전은 전력생산 방식 중에서 가장 값비싸고, 가장 위험하며,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그동안 핵에너지 생산에 쏟았던 비용과 노력과 정성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로 전환한다면 에너지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 에너지 정책의 무게 중심을 핵발전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 공급에서 수요 관리로, 중앙 정부와 거대 발전 회사와 공기업과 전문가가 주도하는 에너지 정책을 지역과 시민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 87항)

“핵발전이든 핵무기든, 핵과 평화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 핵무기와 핵발전, 곧 핵기술은 생명체 자체는 물론 생태계 전체를 교란시키고, 회복 불능의 상태로 내몰아, 그 안에 존재하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 무생물, 미래의 모든 생명체의 삶의 환경권을 침해한다. ...핵은 이렇게 생명권과 환경권을 훼손하거나 그에 반함으로써 그리스도교 신앙의 출발점이며 완성인 하느님의 창조 역사와 구원 역사를 부정한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 113, 121-122항).

## [탄소중립]

37. 석탄발전소 폐쇄와 관련하여 이재명 후보는 2040년까지 가동 중단 추진 의견을, 윤석열 후보는 폐쇄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나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다. 심상정 후보는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 의견을 냈다.

38.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관련하여 이재명 후보는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으로 가는 데 필요한 의견을 내었고, 윤석열 후보는 건설 중단 반대 의견만 내었다. 심상정 후보는 건설 중단 찬성 의견을 냈다.

39. 초고압송전탑 건설과 관련하여 이재명 후보는 건설을 최소화하겠다는 의견을 윤석열 후보는 건설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대책 마련에 관해 답변했다. 심상정 후보는 건설 중단을 공약했다.

40.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이재명 후보는 상업, 주거 건물과 산업 영역의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늘이는 방안을 내놓았으며, 윤석열 후보는 수도권의 신규 전력 부하 증가를 막는 정책추진 의견을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를 강조했다.

<교회의 가르침>

“.....서둘러 정책을 개발하여 앞으로 몇 년 안에, 예를 들어, 화석 연료를 대체하여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고, 이산화탄소와 심각한 오염을 유발하는 여러 기체들의 배출을 과감하게 감소시켜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매우 적게 이용되고 있습니다.”(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26항)

41. 신공항건설과 관련하여 이재명 후보는 종합적인 검토 의견, 윤석열 후보는 확정된 사업 철회에 관한 문제가 크다는 의견 등을 내었고, 두 후보 모두 신공항 건설 후 탄소중립을 위한 공항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신공항 건설계획 백지화를 공약했다.

<교회의 가르침>

“환경 영향 평가는 생산 계획, 어떤 정책이나 계획, 또는 프로그램의 수립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 처음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학제적 방식으로 투명하며 모든 경제적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반드시 노동 조건과 인간의 육체와 정신 건강, 그리고 지역 경제와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 토론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특별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자녀들의 미래에 필요한 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즉각적 경제적 이익을 초월한 목적들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183항).

42.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 기업 참여**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일관된 에너지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기업의 RE100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 수소 등의 무탄소 전원 이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히며,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공약과 기업의 탄소중립 참여 독려 공약을 내놓았다.

<교회의 가르침>

“더 많은 자원과 경제적 정치적 힘을 지닌 이들은 대부분 문제를 호도하거나 그 증상들을 감추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의 일부 부정적 영향만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증상들은 현재의 생산 방식과 소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들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보여줍니다.”(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26항).

43.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참여**에 관해 이재명 후보는 개인적인 실천 사례를 들었으며, 에너지협동조합이나 펀드 투자 등을 통해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생산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개인적인 실천 사례를 들지 않았고, 개개인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체험·토론중심의 환경교육과정 마련에 관한 의견 등을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개인적 실천 사례 소개와 함께 시민 참여를 위한 시스템 마련 등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교회의 가르침>

“이러한 [환경보호를 위한 일상적] 노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에 선을 퍼뜨려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실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행동은, 때로 눈에 잘 띄이지 않지만 늘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 선을 이 세상에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행동의 실천은 우리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삶의 깊이를 더하고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해 줍니다.”(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212항).

## 민족화해위원회 질의에 대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답변 평가

### [평화 증진을 위한 평화와 화해 교육 실시]

44. 학교 교육의 정규 과목 안에서 평화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문제에 대하여,

- 1)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교육과정의 개정은 교육 주체들의 논의가 제일 중요하므로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 2) 윤석열 후보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평화와 통일, 화해에 대한 교육이 현실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는 전문가들과 학교 및 각 교육기관의 의견을 들어 더 좋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 3) 심상정 후보는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 <교회의 가르침>

“교회는 평화는 가능하다는 매우 단순하고 자명한 이치를 언제나 가르쳐 왔으며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평화는 하나의 의무임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자 교황 요한 23세께서 회칙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에서 말씀하셨듯이, 평화는 진리, 정의, 사랑, 자유라는 네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의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새 세대에게 이러한 이상들을 가르칠 의무를 지닙니다.”(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제37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 4항)

### [평화 증진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45. 한국전쟁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 1)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 2) 윤석열 후보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평화 상태를 이룩하면서 이러한 기반 위에서 법적 제도적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 3) 심상정 후보는 대체로 동의했다.

#### <교회의 가르침>

“다섯째 계명은 인간의 생명을 일부러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모든 전쟁이 초래하는 불행과 불의 때문에, 교회는 선하신 하느님께서 오랜 전쟁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도록 모든 이가 기도하고 행동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307항).

## [평화 증진을 위한 유엔의 대북경제제재 완화]

46.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 변화 필요성에 대하여,

- 1)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인 동의 의사를 나타내면서 다만, 스냅백 조항의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하였다.
- 2) 윤석열 후보는 대체로 반대했다. 윤석열 후보는 “대북 경제제재는 현재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며, 만일 제재라는 수단이 소진되면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대북 경제제재로 인해 무고한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고려하면서 “비핵화 전이라도 북한의 내부 상황을 고려하여 인도적 지원을 실시할 것이며,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유엔으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아 대북 경제지원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3) 심상정 후보는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교회의 가르침>

“경제적 제재는 지극히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수단이며, 엄격한 합법적 윤리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 경제 봉쇄는 기간이 한정적이어야 하며, 그에 따른 효과가 뚜렷하지 않을 때는 정당화될 수 없다”(『간추린 사회 교리』, 507항)

“(경제) 제제를 가하는 논리는 이해하지만, 교황청은 그 제재 조치가 효과적이라고 보지 않으므로, 경제제재 조치가 완화되길 희망합니다. 인도주의적 도움, 특히 의약품과 의료 장비의 유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시기에 매우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프란치스코 교황, 주교황청 외교단을 대상으로 한 신년 연설, 2021.)

## [평화 증진을 위한 군비경쟁 반대]

47.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군비축소의 노력에 대해.

- 1)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단, 군비축소는 9.19 군사합의의 철저한 이행을 시작으로 하여 상호운용 통제 등 남북 동시 군비축소로 가야 함”을 명시했다.
- 2) 윤석열 후보는 대체로 동의했다. 윤석열 후보는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궁극적 목표와 재래식 군비축소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지만, “북한의 핵보유로 인한 전략적 비대칭 상태에서 상호주의적 군비축소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3) 심상정 후보는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교회의 가르침>

“전쟁 억지책이 어떠하든,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보호책으로 삼는 군비 경쟁은 평화를 확고히 유지하는 안전한 길이 아니며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균형도 확실하고 진실한 평화가 아니라는 확신을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한다. 군비 경쟁으로 전쟁의 원인들이 제거되기는커녕 오히려 점차 증대될 수밖에 없다”(사목 헌장 81항).

“국제 평화와 안정은 안보, 상호 파괴나 전멸의 위협, 단순한 권력 균형 유지에 관한 그

릇된 의미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서는 안됩니다. (...) 이러한 맥락에서 핵무기 전면 폐기라는 궁극 목표는 하나의 도전 과제이자 도덕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명령이 됩니다”(「모든 형제들」, 262항).



## 사회복지위원회 질의에 대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답변 평가

사회복지분야에서는 크게 세 방향으로 질의를 하였다. 첫째는 장애인, 둘째는 고령화, 셋째는 노숙인 정책이었다. 이 문제에 대한 응답은 (1)적극동의 (2)동의 (3)반대 (4) 적극반대 (5) 무응답으로 후보자 본인의 생각을 쉽게 표현하도록 하였다.

### 1. 장애인 분야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성명서로 발표한 ‘탈시설 로드맵 재개정과 고령 장애인 돌봄 정책’의 필요성이었다.(주거시설의 다양화를 전제로 한 ‘탈시설 로드맵’의 재개정의 필요성/ 주거시설의 종사자의 열악한 환경개선 /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장애인 최저임금 관련정책 / 고령 장애인에 대한 전문 돌봄 및 의료 전문요양시설의 필요성)

이재명 후보는 로드맵 재개정 필요성에 대해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 다만 고령 장애인에 대한 전문요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였다. 이외에 주거시설의 종사자와 생활인의 비율개선에서는 적극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기타, 보호 작업장 문제의 개선에 대해서는 동의하였다.

윤석열 후보는 로드맵의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고 재개정의 동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른 정책추진과정에서도 통합 돌봄의 구축과 주거시설의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대안 설명을 잘 풀이해 주었다. 또한 가장 돋보이는 점은 중증 장애인 고령화에 따른 대책으로 전문요양원의 필요성을 적극적 동의를 해주었다. 기타 장애인 보호작업장 문제의 개선도 적극적 찬성을 하였다.

심상정 후보는 탈시설 로드맵 개정에 대해 적극 반대를, 장애인 보호작업장 문제개선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였다. 고령 장애인에 대한 전문요양원 설치에 대해서는 무응답하였다.

세 후보의 공통점은 현재 주거시설의 종사자에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생활인과 종사자 비율을 끌어올릴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였다.

### 2. 고령화 대책

2025년 초고령화 진입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급증과 돌봄 종사자의 처우 문제로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세 후보가 모두 적극 동의하였다. 또한 이 문제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합리적 정책개선의 필요성도 세 후보 모두 동의하였다.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이라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장기요양의 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대안 수립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적극 동의하였다.

### 3. 노숙인 정책

지역사회 자립 및 자활이 불가능한 노숙인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소홀함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시켰다. 이에 따른 종사자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한 중앙정부로 개선할 필요성은 세 후보 모두 동의하였다. 다만, 노숙인 시설의 역할이 사회안전망으로 더 관심 있게 지원되어야 하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동의하였지만, 심상정 후보는 무응답으로 대신하였다.



## 청소년사목위원회 질의에 대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답변 평가

청소년사목위원회는 대통령 후보에게 교회의 정신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4개의 질문을 제시하였다.

- 54. 가정 폭력 등에 대한 보완 입법
- 55. 아동 성 착취·성폭력 법규 강화
- 56. 청소년복지시설 예산 원천 변경
- 57. 다문화청소년 규정

이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응답을 종합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가정폭력 등에 대한 보완 입법	아동 성착취·성폭력 법규 강화	청소년복지시설 예산 원천 변경	다문화 청소년 규정
이재명	적극적 동의	적극적 동의	적극적 동의	적극적 동의
윤석열	대체로 동의	적극적 동의	대체로 반대	대체로 반대
심상정	적극적 동의	적극적 동의	대체로 동의	적극적 동의

응답한 세 명의 후보 중 이재명 후보는 4문항 모두에 대해 적극적 동의를 함으로써 가장 교회 친화적인 응답을 하였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다문화 청소년과 청소년 관련 예산 원천 변경에 대해 반대를 함으로써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수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사행산업 수익금을 청소년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문제의식이 없는 모습이 아쉽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더욱 세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여성소위원회 질의에 대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답변 평가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여성소위원회는 2022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4개 정당의 후보자들에게 아래 3가지 이슈에 관해 질의하였다.

- 1) 성별 임금 격차 해소
- 2) 여성에 대한 혐오 범죄, 가정 폭력
- 3)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지급

각 이슈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저마다의 꼼꼼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어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반면 당내의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성소위원회에서 질의한 세 이슈는 비단 여성에게만이 아니라 양성평등 노동과 안전한 일터의 실현, 모든 시민이 사회적 돌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철학이 담긴 하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공약이 말의 성찬에 그치지 않으려면 유세 과정에서부터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 15일, 청년의 채용과 관련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TV 광고가 여러 여성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채용 면접관이 거의 남성인 현실과는 달리 광고에서는 여성 면접관이 여러 명 자리하고 있다든지, 여성 지원자가 합격하여 환하게 웃는 반면 두 명의 남성 면접자가 불합격하여 좌절된 표정을 짓고 있는 장면이 ‘무너진 공정과 상식’이라는 문구를 넣는 등 양성평등 개념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태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광고 제작자의 작은 실수로 치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주권자인 시민, 특히 가정과 공동체의 생명 지킴이를 자처하는 여성은 각 후보자의 공약이 세심하게 실천되는 지에 관심이 크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각 후보자의 보다 진실되고 책임성 있는 공약 이행을 기대한다.